

인천광역시 영종구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결	기 관 의 장

제 11 호

2026년 8월 24일 월요일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영종구고시 제2026-188호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고시(제2026-18호))
- 인천광역시영종구고시 제2026-189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제2026-19호))

공 고

- 인천광역시영종구공고 제2026-1486호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2차) 공시송달 공고)
- 인천광역시영종구공고 제2026-1487호 (2026년 퇴직공직자 재산신고에 따른 재산등록사항 공개)
- 인천광역시영종구공고 제2026-1488호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이전설치 행정예고)
- 인천광역시영종구공고 제2026-1490호 (도시계획시설(도로, 큰무리마을~하나개입구 간 도로개설 공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공고·열람)
- 인천광역시영종구공고 제2026-1491호 (도시계획시설(도로, 큰무리마을~하나개입구 간 도로개설 공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공고·열람)
- 인천광역시영종구공고 제2026-1494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이동노동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영종구공고 제2026-1496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3차) 공시송달 공고)

의회규칙

- 인천광역시영종구의회규칙 제15호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영종구

편집 : 홍보미디어실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하고, 같은 법 제8조 제6항과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내역

허가 번호	허가일	위 치	면적	목 적	피허가자 (성명 및 주소)	기 간	
						당초	변경
제2026 - 18호	2026. 8. 14.	인천광역시 영종구 무의동 729-1번지 인근 공유수면	820㎡	갯벌체험장 대기·휴식 및 야외교육장 운영	큰무리어촌계장 차영주 (인천광역시 영종구 대무의로 26-3)	2025. 9. 1. ~ 2026. 8. 31.	2026. 9. 1. ~ 2027. 8. 31.

2026년 8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영 종 구 청 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하고, 같은 법 제8조 제6항과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내역

허가 번호	허가일	위 치	면적	목 적	피허가자 (성명 및 주소)	기 간
제2026 - 19호	2026. 8. 14.	인천광역시 영종구 덕교동 산96-2번지 인근 공유수면	1,508㎡	인천 전통 활쏘기 한마당 행사 개최	(주)온각지협회 인천지부 박진석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173-58, 206동 904호)	2026. 8. 30. 09:00 ~ 18:00

2026년 8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영 종 구 청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2차)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고지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 1. 처분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 2.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41조
- 3. 공시송달 대상자

순번	성명	주소	행정처분내용	공시송달 사유
1	서*원	인천광역시 영종구 하늘중앙로2*번길 2*, 스카이에비뉴* 9*호 (중산동)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2차)	송달불능

4. 공고기간 : 2026. 8. 24.(월) ~ 2026. 9. 7.(월) (14일간)

5. 공시송달 내용

- 가. 「식품위생법」 제41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통지서 및 고지서 등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인천광역시 영종구청 환경위생과에서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최초 3%의 가산금과 이후 매월 1.2%의 증가산금이 부과되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재산상에 불이익(압류)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청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032-760-69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종구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명이
퇴직하여 재산신고에 따른 재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6년 8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영 종 구 공 직 자 윤 리 위 원 회

소속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중구노인인력개발센터		직위	(전)센터장		성명	전순임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건물(소계)			155,000	0	0	155,000	
장녀	다세대주택(전세(임차)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네스빌 건물 59.90㎡	155,000	0	0	155,000	
▶ 예금(소계)			18,487	4,969	46	23,410	
본인		(주)KB손해보험 2,604(264 증가), DB손해보험(주) 644(66 증가), 국민은행 427(425 증가), 농협은행 0(7 감소), 신한은행 56(41 증가),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3,275(234 증가)	5,983	1,030	7	7,006	
장녀		(주)KB손해보험 909(93 증가), (주)KEB하나은행 6,312(442 증가), 농협은행 1, 신한은행 6,818(3,258 증가), 우리은행 83(13 증가),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11(39 감소),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2,270(133 증가)	12,504	3,939	39	16,404	
▶ 채무(소계)			153,986	0	5,751	148,235	
본인	금융채무	국민은행 16,000, 농협은행 2,200(2,750 감소), 신한은행 11,830(1,582 감소)	34,362	0	4,332	30,030	
장녀	금융채무	(주)KEB하나은행 2,500, 신한은행 110,000, 신한카드 5,705(1,419 감소)	119,624	0	1,419	118,205	
총 계			19,501	4,969	-5,705	30,175	증감액: 10,674천원 (가액변동: 0천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24일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관내 상습 무단투기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통한 깨끗한 도시 구축을 위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3(예고내용)

3. 예고기간 : 2026. 8. 24. ~ 2026. 9. 8. (15일간)

4. 공고방법 : 구청 홈페이지(<https://www.yeongjong.go.kr>)

5. 행정예고 내용

가. 내 용 :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설치

나. 사 유 :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등

다. 설치규모 :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3개소 이전설치

라. 장 소

현재 위치	이동(예정) 위치
인천광역시 영종구 운북동 560-61	인천광역시 영종구 중산동 1886-8
인천광역시 영종구 중산동 1960-15	인천광역시 영종구 중산동 1886-25
인천광역시 영종구 중산동 1960-15	인천광역시 영종구 운북동 560-61

마. 촬영범위 및 시간 : 쓰레기무단투기 취약지역 24시간 연중

바.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 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원순환과 ☎032-760-7406)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6. 8. 24. ~ 2026. 9. 8. (15일간)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

- 주소 : 인천광역시 영종구 하늘중앙로 201 한빛프라자 6층 자원순환과

- 팩스 : 032-760-7409

○ 제출서식 : 붙임1 참조

○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영종구 자원순환과 (☎032-760-7406)

【붙임 1】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예 고 명		2026년도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설치			
의견 제출자		성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설치장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설치장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영종구청장 귀하					

도시계획시설(도로, 큰무리마을~하나개입구 간 도로개설 공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공고·열람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504호선, 중로1-505호선, 소로1-6호선 사업명: 큰무리마을~하나개입구 간 도로개설 공사)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4.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영종구 무의동 245-1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504호선, 중로1-505호선, 소로1-6호선)
- 명칭: 큰무리마을~하나개입구 간 도로개설 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중로 1-504호선) 연장(L)=2,045m, 폭원(B)=10m
- (중로 1-505호선) 연장(L)=360m, 폭원(B)=10m
- (소로 1-6호선) 연장(L)=335m, 폭원(B)=1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송도동)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2027.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의 성명·주소: 붙임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에 따름

8. 지형도면: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토 지 조 서

일련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합 계				68,035.0			
1	297-17	제	10	10	국	기획재정부	
2	297-25	제	45	45	국	기획재정부	
3	297-8	도	80	80	국	기획재정부	
4	297-15	대	85	85	공	인천광역시	
5	297-23	대	77	77	공	인천광역시	
6	297-24	대	508	508	공	인천광역시	
7	297-13	구	60	60	국	농림축산식품부	
8	297-21	구	16	16	국	농림축산식품부	
9	297-31	구	22	22	국	농림축산식품부	
10	297-22	구	126	126	국	농림축산식품부	
11	297-32	구	1	1	국	농림축산식품부	
12	297-12	유	255	255	공	인천광역시	
13	297-19	유	407	407	공	인천광역시	
14	297-29	유	51	51	공	인천광역시	
15	297-20	유	1,115	1,115	공	인천광역시	
16	297-30	유	3	3	공	인천광역시	
17	산68-5	임	65	65	공	인천광역시	
18	산68-6	임	312	312	공	인천광역시	
19	산68-7	임	460	460	공	인천광역시	
20	295-14	대	47	47	차*교	무의동 4**	
21	295-23	대	5	5	차*교	무의동 4**	
22	295-24	대	212	212	공	인천광역시	
23	295-15	전	101	101	차*교	무의동 4**	
24	295-25	전	95	95	공	인천광역시	
25	831-2	도	99	99	국	농림축산식품부	
26	831-3	도	15	15	국	농림축산식품부	
27	831-4	도	59	59	국	농림축산식품부	
28	291-24	전	120	120	공	인천광역시	
29	291-21	전	11	11	공	인천광역시	
30	291-22	전	336	336	공	인천광역시	
31	291-23	대	8	8	공	인천광역시	
32	290-2	전	12	12	공	인천광역시	
33	산72-4	임	90	90	공	인천광역시	

34	산72-5	임	6	6	공	인천광역시	
35	291-13	전	231	231	공	인천광역시	
36	291-17	전	46	46	공	인천광역시	
37	291-18	전	92	92	공	인천광역시	
38	291-19	전	307	307	공	인천광역시	
39	산73-2	임	171	171	공	인천광역시	
40	산73-3	임	615	615	공	인천광역시	
41	291-15	전	46	46	공	인천광역시	
42	291-20	전	115	115	공	인천광역시	
43	285	답	126	126	공	인천광역시	
44	287-2	답	75	75	공	인천광역시	
45	산78-6	임	1,935	1,935	공	인천광역시	
46	284-11	임	479	479	공	인천광역시	
47	284-12	임	52	52	공	인천광역시	
48	283-13	대	23	23	공	인천광역시	
49	295-19	대	221	221	차*교	무의동 4**	
50	295-20	대	25	25	공	인천광역시	
51	295-13	전	540	540	차*교	무의동 산1**-46	
52	295-21	전	1	1	차*교	무의동 산1**-46	
53	295-22	전	245	245	공	인천광역시	
54	295-17	전	3	3	차*교	무의동 산1**-46	
55	295-26	전	1	1	차*교	무의동 산1**-46	
56	295-27	전	11	11	공	인천광역시	
57	293-3	답	6	6	차*교	무의동 4**	
58	292	답	79	79	차*교	무의동 4**	
59	292-1	답	23	23	공	인천광역시	
60	산72-3	임	595	595	공	인천광역시	
61	293-4	임	35	35	공	인천광역시	
62	293-5	임	6	6	공	인천광역시	
63	산383-1	도	108	108	국	국토교통부	
64	산383-3	도	18	18	국	국토교통부	
65	810-1	도	73	73	국	농림축산식품부	
66	산77-1	임	195	195	김*애	중구 율목동 2**-19	
67	산77-2	임	361	361	공	인천광역시	
68	283-31	임	1,607	1,607	공	인천광역시	
69	283-37	임	30	30	공	인천광역시	

70	283-38	임	44	44	공	인천광역시	
71	283-32	임	772	772	공	인천광역시	
72	산90-5	임	1,095	1,095	공	인천광역시	
73	산90-6	임	44	44	공	인천광역시	
74	산90-7	임	218	218	공	인천광역시	
75	산90-8	임	2,119	2,119	공	인천광역시	
76	283-14	전	6	6	공	인천광역시	
77	283-35	전	389	389	공	인천광역시	
78	283-36	전	1,080	1,080	공	인천광역시	
79	283-26	전	213	213	공	인천광역시	
80	산384-2	도	35	35	국	국토교통부	
81	산384-3	도	78	78	국	국토교통부	
82	산384-5	도	11	11	국	국토교통부	
83	산384-8	도	12	12	국	국토교통부	
84	산384-9	도	1,197	1,197	국	국토교통부	
85	산384-10	도	23	23	국	국토교통부	
86	산384-11	도	98	98	국	국토교통부	
87	산384-12	도	464	464	국	국토교통부	
88	산384-13	도	361	361	국	국토교통부	
89	283-15	대	38	38	공	인천광역시	
90	283-23	임	235	235	공	인천광역시	
91	283-24	임	42	42	공	인천광역시	
92	283-30	임	1,023	1,023	공	인천광역시	
93	283-17	임	72	72	공	인천광역시	
94	283-25	임	17	17	공	인천광역시	
95	283-27	임	456	456	공	인천광역시	
96	산89-17	임	197	197	이*자	서울 성북구 돈암동 ***-1 **아파트 207동12**	
97	산89-23	임	760	760	공	인천광역시	
98	산89-16	임	149	149	이*자	서울 성북구 돈암동 ***-1 **아파트 207동12**	
99	산89-22	임	4	4	공	인천광역시	
100	산89-18	임	8	8	이*자	서울 성북구 돈암동 ***-1 **아파트 207동12**	
101	산89-24	임	268	268	공	인천광역시	
102	279-11	임	5	5	공	인천광역시	

103	279-24	임	37	37	공	인천광역시	
104	279-16	임	476	476	(주)교**몬	서울 중구 을지로 **	
105	279-27	임	75	75	공	인천광역시	
106	279-28	임	785	785	공	인천광역시	
107	279-18	임	346	346	(주)교**몬	서울 중구 을지로 **	
108	279-29	임	34	34	공	인천광역시	
109	279-30	임	176	176	공	인천광역시	
110	279-14	답	127	127	(주)교**몬	서울 중구 을지로 **	
111	279-25	답	27	27	공	인천광역시	
112	279-26	답	154	154	공	인천광역시	
113	산82-8	임	210	210	(주)교**몬	서울 중구 을지로 **	
114	산82-17	임	14	14	공	인천광역시	
115	산82-18	임	363	363	공	인천광역시	
116	산82-13	임	280	280	전*세	인천 부평구 삼산동 4**-1 **타운 708-10**	
117	산82-23	임	156	156	공	인천광역시	
118	산82-11	임	101	101	이*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6**-1**3차아파 트 3**동**03호	
119	산82-20	임	75	75	공	인천광역시	
120	산82-21	임	102	102	장*각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길**길 **,1001호	
121	산82-22	임	119	119	공	인천광역시	
122	산82-19	임	432	432	공	인천광역시	
123	산82-24	임	26	26	공	인천광역시	
124	산82-28	임	1,117	1,117	공	인천광역시	
125	276-10	임	30	30	공	인천광역시	
126	276-11	임	1	1	공	인천광역시	
127	276-12	임	9	9	공	인천광역시	
128	276-14	전	1	1	공	인천광역시	
129	276-18	임	1,609	1,609	공	인천광역시	
130	276-13	전	15	15	공	인천광역시	
131	276-20	전	381	381	공	인천광역시	
132	276-15	전	31	31	공	인천광역시	
133	산83-2	임	329	329	공	인천광역시	
134	275-16	임	63	63	공	인천광역시	
135	275-14	답	247	247	공	인천광역시	

136	산153-5	임	932	932	공	인천광역시	
137	산153-6	임	1,818	1,818	공	인천광역시	
138	산153-7	임	3	3	공	인천광역시	
139	산385-1	도	431	431	국	국토교통부	
140	산385-3	도	50	50	국	국토교통부	
141	산385-4	도	47	47	국	국토교통부	
142	272-4	전	40	40	공	인천광역시	
143	272-8	전	8	8	공	인천광역시	
					한*자	인천 중구 무의동 산1**-3	
144	275-17	임	21	21	공	인천광역시	
145	275-18	임	39	39	공	인천광역시	
146	275-19	임	1	1	공	인천광역시	
147	275-20	임	17	17	공	인천광역시	
148	272-2	도	11	11	공	인천광역시	
149	272-5	도	131	131	공	인천광역시	
150	796	도	69	69	국	농림축산식품부	
151	산89-15	임	220	220	공	인천광역시	
152	산89-19	임	198	198	공	인천광역시	
153	산89-20	임	32	32	공	인천광역시	
154	산89-21	임	952	952	공	인천광역시	
155	283-18	임	6	6	공	인천광역시	
156	283-19	임	238	238	에스***** **주식회 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서린동)	
157	283-28	임	38	38	공	인천광역시	
158	283-20	임	25	25	공	인천광역시	
159	283-29	임	1	1	공	인천광역시	
160	283-21	임	4	4	공	인천광역시	
161	283-22	임	136	136	공	인천광역시	
162	279-20	임	318	318	공	인천광역시	
163	279-10	임	77	77	공	인천광역시	
164	279-21	대	46	46	공	인천광역시	
165	279-22	대	12	12	공	인천광역시	
166	279-23	임	17	17	공	인천광역시	
167	278-23	임	29	29	김*곤	중구 신도시북로**번길 **, 104동 3**호	
168	278-8	임	7	7	공	인천광역시	

169	278-25	임	301	301	공	인천광역시	
170	278-17	임	2	2	공	인천광역시	
171	278-29	임	93	93	공	인천광역시	
172	278-13	임	1	1	공	인천광역시	
173	278-27	임	382	382	공	인천광역시	
174	278-21	임	57	57	공	인천광역시	
175	278-19	임	21	21	공	인천광역시	
176	278-30	임	58	58	공	인천광역시	
177	278-31	임	1	1	공	인천광역시	
178	276-24	임	59	59	주식회사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 스타워)	
179	276-29	임	105	105	주식회사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 스타워)	
180	276-32	임	7	7	안*옥	충구 신도시북로 **, 7**동 803호	
181	산87-14	임	25	25	공	인천광역시	
182	산86-2	임	130	130	공	인천광역시	
183	산86-1	임	146	146	공	인천광역시	
184	산85-2	임	1,375	168	주식회사 **** 랜드	경기도 김포시 풍무로***번길 18, 금강리체**4호	
					한*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길 **, 1**동3002호	
185	산85-11	임	82	82	공	인천광역시	
186	산85-1	임	926	61	김*주	서울 양천구 신월동 *** 서울**아파트3동10** 호	
					박*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16** 고창마을반도유보라아 파트9**-404	
					오*태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 *****아파트103동1**5 호	
					유*자	인천광역시 중구 덕교동 1**-24 **8호	
					이*택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길 19, **7동204호	
					정*선	서울 종로구 명륜1가 3*-5*	
187	산85-10	임	84	84	공	인천광역시	
188	산85	임	2,806	237	이*택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15길 **, **7동**4호	

189	산85-8	임	514	514	공	인천광역시	
190	270-11	답	44	44	이*국	중구 무의동 4**	
191	270-13	전	22	22	공	인천광역시	
192	272-3	답	110	110	공	인천광역시	
193	272-6	답	1	1	공	인천광역시	
194	272-7	답	1	1	공	인천광역시	
195	271-2	도	13	13	공	인천광역시	
196	270-4	도	1	1	공	인천광역시	
197	270-12	도	46	46	공	인천광역시	
198	270-17	도	22	22	공	인천광역시	
199	산386-1	도	97	97	국	국토교통부	
200	산386-2	도	166	166	국	국토교통부	
201	산156-3	임	646	646	공	인천광역시 중구	
202	산156-4	임	942	942	공	인천광역시 중구	
203	산156-5	임	3,158	3,158	공	인천광역시 중구	
204	263-2	답	5	5	공	인천광역시	
205	263-3	답	15	15	공	인천광역시	
206	261-1	전	299	299	공	인천광역시	
207	261-2	전	9	9	공	인천광역시	
208	259-1	답	255	255	공	인천광역시	
209	259-2	답	25	25	공	인천광역시	
210	180-56	답	120	120	공	인천광역시	
211	180-62	답	5	5	공	인천광역시	
212	180-55	제	47	47	국	농림축산식품부	
213	180-20	도	82	82	공	인천광역시	
214	180-53	답	64	64	공	인천광역시	
215	180-66	답	630	630	공	인천광역시	
216	180-21	도	83	83	공	인천광역시	
217	산388-2	도	428	428	국	국토교통부	
218	180-52	구	41	41	공	인천광역시	
219	180-65	구	141	141	공	인천광역시	
220	180-57	답	160	160	공	인천광역시	
221	180-63	답	14	14	공	인천광역시	
222	180-45	답	7	7	공	인천광역시	
223	180-58	답	498	498	공	인천광역시	

224	180-59	답	23	23	공	인천광역시	
225	180-67	제	11	11	국	농림축산식품부	
226	180-61	답	2	2	공	인천광역시	
227	180-64	답	34	34	공	인천광역시	
228	186-11	도	34	34	공	인천광역시	
229	186-9	답	79	79	공	인천광역시	
230	186-14	답	432	432	공	인천광역시	
231	198-1	대	281	9	유*택	인천 중구 무의동 1**	
232	198-3	대	358	358	공	인천광역시	
233	198-4	대	3	3	공	인천광역시	
234	197-14	도	64	64	공	인천광역시	
235	186-8	도	6	6	공	인천광역시	
236	186-13	도	55	55	공	인천광역시	
237	186-7	답	14	14	공	인천광역시	
238	186-12	답	249	249	공	인천광역시	
239	197-5	전	61	61	공	인천광역시	
240	197-12	전	255	255	공	인천광역시	
241	197-13	전	14	14	공	인천광역시	
242	820-2	도	101	101	국	농림축산식품부	
243	210-12	답	2	2	공	인천광역시	
244	210-13	답	9	9	공	인천광역시	
245	210-15	답	83	83	공	인천광역시	
246	210-16	답	1,329	1,329	공	인천광역시	
247	821-4	도	3	3	국	농림축산식품부	
248	821-6	도	3	3	국	농림축산식품부	
249	821-7	도	63	63	국	농림축산식품부	
250	821-8	도	2	2	국	농림축산식품부	
251	210-23	답	32	32	이*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왕가볼로 **,1**4동 302호(노은동,****아 파트11단지)	
					이*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왕가볼로 **,1**4동 302호(노은동,****아 파트11단지)	
252	210-25	답	20	20	이*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왕가볼로 **,1**4동 302호(노은동,****아 파트11단지)	
					이*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왕가볼로 **,1**4동 30*호(노은동,**마을 아파트11단지)	

253	210-26	답	876	876	공	인천광역시	
254	210-17	답	20	20	양*미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길 **, 205동 1**4호(도화동,***타운)	
255	210-19	답	52	52	양*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 ***, 2**동 8**호(북가좌동,***래 미안이편한세상아파트)	
					양*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 ***, 2**동 8*1호(북가좌동,***래 미안이편한세상아파트)	
256	210-20	답	1,048	1,048	공	인천광역시	
257	산243-7	임	1,218	1,218	최*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원로**번길 2, 1*5동 4*2호(마북동,연원*** ***아파트)	
					설*필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번길 **, 7동 1**6호(만수동,***아 파트)	
258	133-16	임	71	71	공	인천광역시	
259	산392-1	도	361	361	국	국토교통부	
260	139-4	종	70	70	공	인천광역시	
261	139-5	종	35	35	공	인천광역시	
262	271-1	답	3	3	공	인천광역시	
263	271-3	답	301	301	공	인천광역시	
264	270-14	답	234	234	공	인천광역시	
265	270-15	답	35	35	공	인천광역시	
266	270-16	답	10	10	공	인천광역시	
267	산155-7	임	77	77	공	인천광역시	
268	산155-8	임	71	71	공	인천광역시	
269	262-1	답	53	53	공	인천광역시	
270	262-2	답	20	20	공	인천광역시	
271	249-1	전	7	7	공	인천광역시	
272	249-2	전	7	7	공	인천광역시	
273	249-3	전	1	1	공	인천광역시	
274	산161-8	임	160	160	공	인천광역시	
275	840-1	도	108	108	국	농림축산식품부	
276	203-3	도	59	59	공	인천광역시	
277	818-1	도	6	6	국	농림축산식품부	
278	200-1	주	2	2	공	인천광역시	

279	201-4	도	3	3	공	인천광역시	
280	201-3	전	4	4	공	인천광역시	
281	839-3	구	9	9	국	농림축산식품부	
282	839-6	구	2	2	국	농림축산식품부	
283	839-7	구	814	814	국	농림축산식품부	
284	197-4	답	58	58	공	인천광역시	
285	197-11	답	100	100	공	인천광역시	
286	194-1	전	27	27	공	인천광역시	
287	194-5	전	1	1	공	인천광역시	
288	194-6	전	245	245	공	인천광역시	
289	245-9	답	17	17	공	인천광역시	
290	245-10	답	415	415	공	인천광역시	
291	245-11	답	65	65	이*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왕가볼로 **, 11**동 3*2호(노은동, **마을 아파트11단지)	
					이*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왕가볼로 **, 11**동 3*2호(노은동, **마을 아파트11단지)	
292	245-12	답	1,169	1,169	공	인천광역시	
293	210-21	답	52	52	공	인천광역시	
294	210-22	답	260	260	공	인천광역시	
295	133-14	임	1	1	공	인천광역시	
296	133-15	임	6	6	공	인천광역시	
297	826-2	구	365	365	국	농림축산식품부	
298	237-9	전	388	388	공	인천광역시	
299	236-6	전	620	620	공	인천광역시	
300	238-5	임	53	53	공	인천광역시	
301	238-4	임	71	71	공	인천광역시	
302	238-13	임	266	266	공	인천광역시	
303	227-2	답	97	97	공	인천광역시	
304	227-5	답	788	788	공	인천광역시	
305	산171-39	임	46	46	공	인천광역시	
306	산171-40	임	956	956	공	인천광역시	
307	산171-41	임	118	118	공	인천광역시	
308	225-2	전	5	5	공	인천광역시	
309	829-1	도	2	2	국	농림축산식품부	
310	829-2	도	61	61	국	농림축산식품부	

311	226-3	답	13	13	공	인천광역시	
312	226-11	답	196	196	공	인천광역시	
313	120-3	전	1	1	공	인천광역시	
314	120-7	전	43	43	공	인천광역시	
315	120-2	전	1	1	공	인천광역시	
316	120-4	전	22	22	공	인천광역시	
317	245-13	답	233	233	공	인천광역시	
318	237-7	대	8	8	공	인천광역시	
319	237-8	대	73	73	공	인천광역시	
320	235-2	대	29	29	공	인천광역시	
321	238-6	임	39	39	공	인천광역시	
322	238-11	대	5	5	공	인천광역시	
323	227-4	답	73	73	공	인천광역시	
324	227-7	답	106	106	공	인천광역시	
325	228-1	답	36	36	공	인천광역시	
326	228-2	답	65	65	공	인천광역시	
327	226-15	답	53	53	공	인천광역시	
328	226-14	답	64	64	공	인천광역시	
329	226-9	답	334	334	공	인천광역시	
330	226-13	전	95	95	공	인천광역시	
331	226-12	전	74	74	공	인천광역시	
332	250-2	답	1	1	공	인천광역시	
333	252-6	임	1	1	공	인천광역시	
334	180-50	답	44	44	공	인천광역시	
335	180-60	답	768	768	공	인천광역시	
336	산243-5	임	649	649	공	인천광역시	
337	산82-10	임	22	22	공	인천광역시	
338	275-15	전	10	10	공	인천광역시	
339	821-3	도	7	7	국	농림축산식품부	
340	843-2	구	17	17	국	농림축산식품부	
341	286-3	도	1	1	공	인천광역시	
342	산82-6	임	2,271	8	이*재	인천광역시 중구 대무의로 2**(무의동)	
343	산82-15	임	58	9	이*재	인천광역시 중구 대무의로 2**(무의동)	

도시계획시설(도로, 하나개입구~광명항 간 도로개설 공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공고·열람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504호선, 중로2-501호선, 사업명: 하나개입구 ~ 광명항 간 도로개설 공사)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4.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영종구 무의동 산392-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류504호선, 중로2류501호선)
- 명칭: 하나개입구 ~ 광명항 간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중로 1-504호선) 연장(L)=1,267m, 폭원(B)=10m
- (중로 2-501호선) 연장(L)=213m, 폭원(B)=1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송도동)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2027.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의 성명·주소: 붙임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에 따름

8. 지형도면: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토 지 조 서

중로 2-501호선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편입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권리 관계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합 계				9,124						
1	37-5	답	191	67	강기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95, 4층 (방배동)	웅진농 업협동 조합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41번길 1 (신흥동3가)	근저 당	중로1- 504 중복 / 1/2
					최은숙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95, 4층 (방배동)				1/2
2	39-60	전	7	7	강기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95, 4층 (방배동)	웅진농 업협동 조합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41번길 1 (신흥동3가)	근저 당	1/2
					최은숙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95, 4층 (방배동)				1/2
3	36-10	전	5	5	박영선	인천광역시 중구 대무의로 470-6(무의동)	화도진 새마을 금고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로 30(송현동)	근저 당/ 지상 권	
							장정미	인천광역시 서구 크리스탈로74번길 26, 451동 2603호(청라동, 청 라더샵레이크파크)	근저 당	
4	36-11	전	806	806	정천태	인천 중구 중산동 884-22 국제빌리지 에이동 402호	김옥희	인천광역시 중구 운중로 197(중산동)	근저 당	
5	36-13	도	1	1	이금실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35				
6	806-1	도	54	54	국	농림축산식품부				
7	32-7	도	82	82	공	인천광역시				
8	32-4	전	9	9	공	인천광역시 중구청				
9	807-1	구	501	501	국	농림축산식품부				
10	32-5	전	18	18	강석훈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38 동익아파트 801동 202호				
11	32-6	전	5	5	강석훈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38 동익아파트 801동 202호				
12	25-2	도	43	43	장윤일	웅진군 용유면 무의리 35				
13	26-2	도	23	23	정종근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1-2 셋별아파트 106동 901호	주식회 사중앙 에프엔 아이유 동화대 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337, 3층 (권선동 990-1, 수원푸조전 시장)	가압 류	
14	26-3	답	48	48	공	인천광역시 중구청			근저 당	6/139
					최익수	인천 남구 용현동 621-57	인천수 산업협 동조합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77-5 (연수중앙지점)		133/1 39

15	28-31	전	30	30	나요순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검단2지구23블럭1-5롯데 인천힐스테이트2차 209-1301	인천수 산업협 동조합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77-5(용유지점)	근저 당/ 지상 권	
16	28-32	전	165	165	나요순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검단2지구23블럭1-5 롯데 인천힐스테이트2차 209-1301	인천수 산업협 동조합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77-5(용유지점)	근저 당/ 지상 권	
17	28-30	전	689	689	최익수	인천광역시 남구 토금중로30번길 19(용현동)				
18	28-33	전	44	44	김완선	인천광역시 중구 대무의로 165 (무의동)	중구농 업협동 조합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166 (운남동)(용유지점)	근저 당	1/2
					신종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봉로 77, 105동 1702호 (신길동,래미안에스 티움)				1/2
19	산307 -7	임	507	507	공	인천광역시				
20	산307 -6	임	1,240	1,240	공	인천광역시				
21	산308 -1	임	22	22	백성엽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636-1 우성아파트 103-1605				
22	5-22	임	48	48	구재용	인천 중구 북성동3가 3-25				
23	36-15	임	1,282	1,272	박재웅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4 두암2차무등파크맨션 202동1404호				중로1 -504 중복
24	36-12	전	37	37	강기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95, 4층 (방배동)	웅진농 업협동 조합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41번길 1 (신흥동3가)	근저 당	1/2
					최은숙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95, 4층 (방배동)				1/2
25	36-3	전	149	149	강기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95, 4층 (방배동)	웅진농 업협동 조합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41번길 1 (신흥동3가)	근저 당	1/2
					최은숙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95, 4층 (방배동)				1/2
26	산330 -7	임	456	191	김승기	인천광역시 남구 문화로 45, 103동 904호(관교동,풍림아 파트)				중로1 -504 중복 / 575/1 314
					김병호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631-1 현대프라임아파트 14동1202호				575/1 314
					공	인천광역시				164/1 314
27	산330 -8	임	90	90	김승기	인천광역시 남구 문화로 45, 103동 904호(관교동,풍림아 파트)				575/1 314
					김병호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631-1 현대프라임아파트 14동1202호				575/1 314
					공	인천광역시				164/1 314

28	산330-9	임	258	258	김승기	인천광역시 남구 문화로 45, 103동 904호(관교동, 풍림아파트)				575/1314
					김병호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631-1 현대프라임아파트 14동 1202호				575/1314
					공	인천광역시				164/1314
29	24	답	73	73	정중근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1-2 셋별아파트 106동 901호	주식회사중앙에프엔아이유동화대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337, 3층 (권선동 990-1, 수원푸조전시장)	가압류	
30	808	도	10	10	국	농림축산식품부				
31	산321-40	임	684	684	이나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32, 102동 1901호(송도동, 더샵 센트럴파크1)	연수구 (인천광역시)		압류	4/23
					이정열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3				4/23
					이정섭	인천 중구 무의동 2				15/23
32	25-1	답	122	122	장윤일	웅진군 용유면 무의리 35				
33	28-5	전	251	251	공	인천광역시				
34	28-4	도	271	271	공	인천광역시				
35	산321-38	임	208	208	강일환	서울 관악구 봉천동 1708 두산아파트 102-2204				
36	산321-39	임	1	1	강일환	서울 관악구 봉천동 1708 두산아파트 102-2204				
37	21-14	대	25	25	박주연	인천 부평구 부평동 70-5 동아아파트 26동 1406호				
38	5-23	임	438	438	구제용	인천 중구 북성동3가 3-25				
39	5-27	임	24	24	이남순	인천광역시 중구 대무의로 489-3(무의동)				
40	21-15	임	27	27	박주연	부평구 부평동 70-5 동아아파트 26동 1406호				
41	5-24	임	194	194	구제용	인천 중구 북성동3가 3-25				
42	산395-5	도	305	305	국	국토교통부				
43	산321-36	임	65	65	황기욱	인천남구관교동13-8 풍림아파트103동101호				50/363
					공	인천광역시				49/363
					박주연	부평구 부평동 70-5 동아아파트 26동 1406호				184/363
					최진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500 개포2차우성아파트 15동 1305호				40/363
					정황월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184번길 8, 401호(논현동)				40/363
44	산321-37	임	15	15	정황월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184번길 8, 401호(논현동)				

중로1-504호선

일련 번호	지 번	지 목		지 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권리 관계	비고
						성 명	주 소		
합 계					39,427				
1	139-6	중	중	12	12	재단법인* *****유 지재단	서울 중구 태평로1가 ***-		
2	138-1 0	전	전	133	133	이*식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산1**	근저 당/ 지상 권	
3	산248 -8	임	임	165	165	공	인천광역시		
4	143-2 3	대	대	140	140	김*주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 33, 8**동 5**호(산본동,계룡아파트)	근저 당	1/3
						김*현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110번길 *, **06호(문현동,금융센터디온플레이스)		1/3
						김*현	경기도 부천시 장말로237번길 **-(중동)		1/3
5	143-1 1	도	도	392	392	사*자	인천광역시 중구 흰바위로 34, 10**동 10**호(운서동,영종주공스카이빌아파 트)	근저 당	1/4
						김*현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110번길 *, **06호(문현동,금융센터디온플레이스)		1/4
						김*현	경기도 부천시 장말로237번길 **-(중동)		1/4
						김*주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 33, 8**동 5**호(산본동,계룡아파트)		1/4
6	143-2 2	전	전	24	24	사*자	인천광역시 중구 흰바위로 34, 10**동 10**호(운서동,영종주공스카이빌아파 트)	근저 당	
								근저 당	
7	143-1 8	전	전	4	4	신*식	인천광역시 중구 대무의로 2**(무의동)	근저 당	
8	143-2 4	대	대	75	75	신*식	인천광역시 중구 대무의로 2**(무의동)	근저 당	
								근저 당	
9	143-2 7	임	임	379	379	신*식	인천광역시 중구 대무의로 2**(무의동)	근저 당	
								근저 당	
10	143-2 6	임	임	361	361	공	인천광역시중구		
11	143-2 5	임	임	133	133	이*순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운남동)	근저 당/ 지상 권	
12	143-2 9	임	임	53	53	이*도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1**		
13	143-3 0	도	도	23	23	정*동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대로29길 ***-5 (상도동)		
14	143-2 8	대	대	2	2	정*동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대로29길 ***-5 (상도동)		

15	146-3 6	대	대	73	73	박*서	인천광역시 중구 대우의로 3**(무의동)		
16	146-3 7	대	대	49	48	곽*환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9길 25, 1**동 8**호 (미아동, 삼성래미안트리베라아파트)	근저 당	
17	146-1 8	임	임	8	8	곽*환	서울 노원구 월계동 18 그랑빌아파트 1**동 **01호		
18	146-3 8	임	임	261	214	김*자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201, 2**동 **04호(갈산동, 대동아파트)	근저 당/ 지상 권	
19	146-4 0	임	임	99	99	공	인천광역시		
20	146-3 9	임	임	186	186	이*희	인천 중구 답동 8-1 로알답동맨션 1**동 **1호		
21	산254 -26	임	임	115	115	공	인천광역시		
22	산282 -1	임	임	249	249	박*희	인천광역시 중구 큰무리로7번길 *(무의동)	근저 당/ 지상 권	
23	산282 -2		임	1,054	1,054	박*희	인천광역시 중구 큰무리로7번길 *(무의동)	근저 당/ 지상 권	
24	산277 -23	임	임	845	845	유*홍	인천 동구 송림동 1**		1653/ 11237
					공	인천광역시		9584/ 11237	
25	산277 -24		임	1	1	유*홍	인천 동구 송림동 1**		1653/ 11237
					공	인천광역시		9584/ 11237	
26	산287 -22	임	임	1,370	1,370	신*순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6**번길 **(간석동)	가등 기	1/3
					인*분	인천시 중구 운북동 **		1/3	
					공	인천광역시		1/3	
27	산287 -17	임	임	795	795	공	인천광역시		
28	산286 -3	임	임	3,574	3,574	고*순	인천 남구 도화동 2**	근저 당	60/83 7
					박*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남로 17, 1**동**02호(선부동, 안산라프리오)	근저 당	60/83 7	
					송*근	영주시 영주동 513-1 현대 강변 타운 *동 **6호	근저 당	120/8 37	
					공	인천광역시		460/8 37	
					전*상	서울 강남구 도곡동 540 도곡삼호아파트 *동 **5호		50/83 7	
					정*영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744-1 풍림아이원 4-1 1단지아파트 2**-1**		37/83 7	
					최*화	충북 단양군 상진리 6**		50/83 7	
29	산287 -18	임	임	11	11	공	인천광역시		
30	산287 -19		임	1	1	공	인천광역시		

31	52-2	임	임	686	686	박*열	인천광역시 중구 흰바위로 15, 8**동 6**호(운서동, 풍림아이원8-2단지아파트)	근저당	1/3
						송*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 1**동 **03호(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1/3
						한*익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번길 **, 2**동 9**호(운서동, 영종금호어울림2차아파트)		1/3
32	52-3		임	30	30	박*열	인천광역시 중구 흰바위로 15, 8**동 6**호(운서동, 풍림아이원8-2단지아파트)	근저당	1/3
						송*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 1**동 **03호(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1/3
						한*익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번길 **, 2**동 9**호(운서동, 영종금호어울림2차아파트)		1/3
33	133-2 1	전	전	59	59	공	인천광역시		
34	133-2 2	답	답	32	32	공	인천광역시		
35	133-1 8	전	전	4	4	이*심	인천광역시 중구 대무의로 3** (무의동)		
36	133-1 9	답	답	1	1	정*숙	인천광역시 중구 대무의로 3** (무의동)		
37	133-2 0	전	전	227	227	이*심	인천광역시 중구 대무의로 3** (무의동)		
38	138-2 2	임	임	184	184	김*주	인천광역시 중구 대무의로 3**-1* (무의동)	근저당	
39	138-1 9	임	임	363	363	차*숙	서울 은평구 증산동 2**-* 증산빌라 씨동 1**호		
40	138-1 8	대	대	10	10	차*숙	인천광역시 중구 대무의로 3** (무의동)	근저당	
41	128-4 1	임	임	84	84	김*복	남구 용현동 1**-*1	압류	2046/2974
						이*희	인천 중구 답동 8-1 로알답동맨션 1**동**1호	압류	264/2974
						조*경	인천 중구 향동7가 27-107 비취맨션 *동 **2호	압류	198/2974
						차*숙	서울 은평구 증산동 209-2 증산빌라 씨동 1**호	압류	66/2974
						이*재	인천 연수구 동춘동 961 태평2차아파트 1**동 **1호		33/2974
						우*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961 태평2차아파트 1**동 **1호		33/2974
						이*재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288 한신아파트 1**동 13**호		66/2974
						조*탁	서울 도봉구 창동 804 대우아파트 1**동 **03호		66/2974
						허*숙	인천 중구 증산동 12**-*		66/2974
						권*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03번지 목동신시가리아파트3**동1**호		66/2974
42	138-2 1	도	도	87	87	이*식	인천광역시 중구 하나개로 1**-1 (무의동)	근저당	
43	138-2 0	대	대	16	16	이*식	인천광역시 중구 하나개로 1**-1 (무의동)	근저당	

44	산249-22	임	임	294	294	공	인천광역시		
45	산249-23	임	임	727	727	공	인천광역시		
46	산249-21	임	임	134	134	정*상	인천 남구 주안동 1286 태평아파트 *동 **2호		
47	산249-24	임	임	898	898	박*모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202-11, *동 **6호(잠원동, 헤미리아파트)		
48	산249-25	임	임	352	352	공	인천광역시		
49	산239-13	임	임	931	931	공	인천광역시		
50	산239-14	임	임	207	207	김*길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1**		
51	산392-6	도	도	1,732	1,732	국	국토교통부		
52	산392-7		도	653	653	국	국토교통부		
53	산392-8		도	134	134	국	국토교통부		
54	산283-5	임	임	1,015	1,015	공	인천광역시		
55	산284-8	임	임	7	7	공	인천광역시		
56	산283-7	임	임	2,749	2,749	공	인천광역시		
57	산283-8	임	임	496	496	김*철	인천광역시 부평구 상정로 **-1(십정동)		
58	산287-16	임	임	874	874	인*분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	가등기	1/3
						신*순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6**번길 *0(간석동)		1/3
						공	인천광역시		1/3
59	산287-20	임	임	966	966	인*분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	가등기	1/3
						신*순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6**번길 *0(간석동)		1/3
						공	인천광역시		1/3
60	산292-7	임	임	1,554	1,554	박*관	인천 중구 운서동 2709-3 영종주공스카이빌아파트 7**동 1**호		
61	산292-10	임	임	226	226	김*경	인천광역시 중구 하나개로 **-**(무의동)	근저당	1/6
						장*란	인천광역시 남동구 방축로 493, 1**동 **03호(간석동,현대아파트)		1/6
						장*무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 93, 9**동 **04호(논현동,넛마을신영지웰아파트)		1/6
						장*조	인천광역시 중구 하나개로 **-**(무의동)		1/6
						장*조	인천 연수구 연수동 536 동남아파트 1**-**01		1/6
						정*숙	인천 연수구 연수동 536 동남아파트 1**-**01		1/6
62	62-52	임	임	276	276	공	인천광역시		

63	53-13	전	전	89	89	공	인천광역시		
64	62-47	도	도	73	73	최*수	인천광역시 남구 토금중로30번길 **(용현동)	지상 권	
								근저 당	
65	62-59	도	도	27	27	최*수	인천 남구 용현동 6**-**	지상 권	
								근저 당	
66	61-2	대	대	69	69	최*수	인천 남구 용현동 6**-**	지상 권	
								지상 권	
								근저 당	
67	62-58	도	도	215	215	최*수	인천 남구 용현동 6**-**	지상 권	
68	60-9	대	대	1	1	최*수	인천 남구 용현동 6**-**	지상 권	
69	62-53	도	도	2	2	매*생	인천 중구 송월동1가 10-1 송월아파트 *-**1	가압 류	
70	62-54		도	4	4	매*생	인천 중구 송월동1가 10-1 송월아파트 *-**1	가압 류	
71	63-1	전	전	158	158	이*복	인천광역시 중구 대무의로 5** (무의동)		
72	801-2	도	도	57	57	국	농림축산식품부		
73	65-6	도	도	230	230	김*성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6**-1 현대프라임아파트**동**02호		
74	69-1	답	답	20	20	정*순	인천광역시 중구 대무의로 5**-1(무의동)		
75	802-1	도	도	91	91	국	농림축산식품부		
76	70	전	전	53	53	소유자 확인 불가			
77	72-1	답	답	32	32	이*재	부평구 산곡동 산37-4 현대아파트 3**동 **1호		
78	803-1	도	도	15	15	국	농림축산식품부		
79	73-3	답	답	34	34	이*재	부평구 산곡동 산37-4 현대아파트 3**동 **1호		
80	73-4		도	1	1	이*재	부평구 산곡동 산37-4 현대아파트 3**동 **1호		당초 누락
81	산396 -1	구	구	45	45	국	국토교통부		
82	산396 -2		구	5	5	국	국토교통부		
83	39-64	임	임	1,475	1,475	주식회사* *****개발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로5**번길 **8		
84	39-58	전	전	7	7	최*숙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 *층 (방배동)	근저 당	1/2
						강*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 *층 (방배동)		1/2
85	38-1	답	답	49	49	최*숙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 *층 (방배동)	근저 당	1/2

						강*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 *층 (방배동)		1/2
86	39-59	전	전	2	2	최*숙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 *층 (방배동)	근저당	1/2
						강*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 *층 (방배동)		1/2
87	37-4	답	답	152	152	최*숙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 *층 (방배동)	근저당	1/2
						강*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 *층 (방배동)		1/2
88	37-5	답	답	191	124	최*숙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 *층 (방배동)	근저당	중로2-501 충북 / 1/2
						강*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 *층 (방배동)		1/2
89	36-15	임	임	1,282	10	박*웅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4 두암2차무등파크맨션2**동 **04호		중로2-501 충북
90	산292-9	임	임	1,528	1,528	장*무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 93, 9**동 **04호(논현동, 넷마을신영지웰아파트)		
91	62-51	임	임	4	4	공	인천광역시		
92	62-50	임	임	2,351	2,351	공	인천광역시		
93	62-55	전	전	432	432	박*남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51번안길 **, 6**동 **03호 (당하동, 인천검단힐스테이트6차)	근저당	
94	62-57	전	전	747	747	차*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37 현대아파트 1**-**03	근저당	
95	62-48	대	대	5	5	차*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37 현대아파트 1**-**03	근저당	
96	64-3	도	도	55	55	김*성	서울 광진구 구의동 6**-1 현대프라임아파트 **동12**호		
97	68	답	답	16	16	이*복	인천광역시 중구 대무의로 5** (무의동)		
98	66-8	전	전	18	18	차*섭	인천 중구 무의동 4**	근저당	
99	산300-11	임	임	7	7	공	인천광역시중구청		299/3 97
						공	인천광역시		98/39 7
100	산300-10		임	248	248	공	인천광역시중구청		98/39 7
						공	인천광역시		299/3 97
101	산298-8	임	임	201	201	이*기	서울 동작구 상도동 1**-*		
102	74	전	전	102	102	이*재	인천 부평구 산곡동 산37-4 현대아파트 3**동1**호		
103	804-1	도	도	113	113	국	농림축산식품부		
104	75-2	전	전	140	140	이*재	인천 부평구 산곡동 산37-4 현대아파트 3**동1**호		

105	39-70	임	임	5	5	황*기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송한5길 **	근저당	10703 9/260 000
						정*재	인천광역시 중구 대무의로 3**-** (무의동)		51357 /2600 00
						황*기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21**번길 **-**		10160 4/260 000
106	39-71		임	18	18	황*기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송한5길 **	근저당	10703 9/260 000
						정*재	인천광역시 중구 대무의로 3**-** (무의동)		51357 /2600 00
						황*기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21**번길 **-**		10160 4/260 000
107	39-65	임	임	4	4	정*재	인천광역시 중구 대무의로 3**-** (무의동)	근저당	
108	39-66		임	125	125	정*재	인천광역시 중구 대무의로 3**-** (무의동)	근저당	
109	39-69	임	임	31	31	정*재	인천광역시 중구 대무의로 3**-** (무의동)	근저당	
110	39-68	임	임	215	215	황*기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송한5길 **	근저당	
111	39-67	임	임	66	66	오*록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로9번길 20-17, *동 **3호 (검암동, 가현빌라)		7/11
						공	인천광역시		4/11
112	39-62	전	전	1,300	1,300	장*애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138, 1**동**01호 (간석동, 어울림마을 아파트)		
113	39-63	전	전	1,299	1,299	이*희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성로 436, 1**동 **02호 (성수동2가, 대명루첸아파트)	근저당	
114	산330 -6	임	임	350	350	김*호	서울광진구구의동631-1현대프라임아 파트**동12**호		575/1 314
						김*기	인천광역시 남구 문화로 45, 1**동 **4호 (관교동, 풍림아파트)		575/1 314
						공	인천광역시		164/1 314
115	산330 -7		임	456	265	김*호	서울광진구구의동631-1현대프라임아 파트**동12**호		중로2 -501 중복 / 575/1 314
						김*기	인천광역시 남구 문화로 45, 1**동 **4호 (관교동, 풍림아파트)		575/1 314
						공	인천광역시		164/1 314
116	37-6	답	답	195	195	소유자 확인 불가			W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 - 1494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이동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인천광역시 영종구 이동노동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제안이유

- 관내 물류·배달·출장서비스 등 이동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 제95조의2에 근거하여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쉼터 설치·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적용 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제4조)
- 이동노동자 지원사업 및 쉼터 설치·운영
(안 제5조 ~ 제6조)
- 이동노동자 쉼터 이용의 제한(안 제7조)
- 위탁 및 재정지원(안 제8조)

□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6년 9월 14일까지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참조: 경제지원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지원과(일자리정책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안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주소 및 문의 연락처

▷ 주 소 : (우23303) 인천광역시 영종구 하늘중앙로 201,
5층 경제지원과 (중산동)

▷ 연락처 : 032)760-7382[FAX : 032)760-7369]

인천광역시 영종구 이동노동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안전 보호와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직무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동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
2. 구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안전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안전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법률, 노무, 취업, 안전, 건강 등에 대한 상담·교육
3.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및 운영
4. 이동노동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장비 등 지원
5. 이동노동자 인식개선 및 안전 캠페인

6. 그 밖에 구청장이 이동노동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쉼터 설치·운영)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하는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휴식 및 무더위·한파 등으로부터의 건강 보호 공간 제공
2.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복지서비스 제공
3. 안전교육 및 노동환경 개선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제7조(쉼터 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쉼터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쉼터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
2. 쉼터에서 음주, 흡연, 도박 등을 하는 경우
3. 쉼터에서 물건을 팔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평온하고 안전한 쉼터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8조(위탁 및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또

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민용]

주민 의견수렴서

의견제출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의견제출 내용			
제출일자 : 년 월 일 제출인 : (인 또는 서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3차) 공시송달 공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고지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1. 처분제목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2. 법적근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
3. 공시송달 대상자

순번	성명	주소	행정처분내용	공시송달 사유
1	이*	인천광역시 영종구 백운로2*번길 *, 제*동 *호 (중산동)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3차)	송달불능

4. 공고기간 : 2026. 8. 24.(월) ~ 2026. 9. 7.(월) (14일간)

5. 공시송달 내용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통지서 및 고지서 등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인천광역시 영종구청 환경위생과에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최초 3%의 가산금과 이후 매월 1.2%의 증가산금이 부과되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재산상에 불이익(압류)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청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 032-760-69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규칙(공포)

제명

1. 규칙명 :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제정이유

- 2026. 6. 30.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26. 7. 1.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영종구의회 신설에 맞춰 인사규칙을 제정함으로써 정확하고 효율적인 인사행정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총칙(안 제1조~제2조)
- 나. 인사위원회(안 제3조~제7조)
- 다. 시험(안 제8조~제23조)
- 라. 신규임용(안 제24조~제28조)
- 마. 승진임용(안 제29조~제39조)
- 바. 교육(안 제40조~제41조)
- 사. 다면평가(안 제42조~제44조)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의장 최 미 자

2026년 8월 24일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규칙 제15호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과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 인사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3조(설치) 공무원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법 제7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법 제7조제3항과 제5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으로 하되, 「지

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와 제9조의4에 따른다.
제5조(간사 등)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인사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6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이 서명하되, 외부 위촉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9조의4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시험

제8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부를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

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에 따른 전자적 방식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9급 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가 영 제64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제10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에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11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 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제12조(응시자격 및 응시연령의 특례)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8조제5항 및 제21조에 따른 방법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

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 때문에 제11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때 연고지 또는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 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13조(전역 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 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4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

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해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친인척, 근무경험, 사제지간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 및 시험 주관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을 제외하고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해야 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제15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과 관련하여 출장을 가거나 다른 곳에서 출장을 오는 경우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서류전형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회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2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1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 가산점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외)
2. 별표 4에 따른 직류
3.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제18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9에서 정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와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3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에 상당하는 경력이 3년 이상(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8에서 정하는 관련 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를 채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3에 정하지 않은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1.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 최신 경력 반영이 중요한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하는 경우
2. 고도의 전문지식·신기술을 활용하는 융·복합 영역으로 과거 경력 반영 필요성이 낮은 경우
3. 관련 분야 전문가가 적어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 보다 적은 경우 등 채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와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14에 따른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한다)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14에서 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학력별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대학졸업자: 6급·7급·연구사
 - 나. 전문대학졸업자: 7급·8급·연구사
 - 다. 고등학교졸업자: 9급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와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5 및 별표 16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와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⑦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제5항의 학위 소지 및 학력에 관한 판단은 임용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할 때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⑧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7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8과 같다.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 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9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점검위원회 설치)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을 위해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0조(임용점검위원회의 점검) ① 제19조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의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와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제21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4에서 정한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자격증 소지여부는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

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제22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 제한) 영 제16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의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별표 2 또는 별표 9에 따른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별표 3 또는 별표 9에 따른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해당 직급별로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0과 같다.

③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직급별로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9와 같다.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7과 같다.

제4장 신규임용

제24조(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 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 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해야 한다.

제25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작성하되, 직류별·근무희망 기관별·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시험성적이 같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와 관련있는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마친 사람

제26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를 작성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27조(임기제공무원의 신규임용 시 연봉책정) ①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제3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직급별 상·하한액 범위에서 정하며, 최초 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각 직급별 하한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최초 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계획이 우수하고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 각 직급별 하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필요성과 이를 증명할 자료를 첨부하여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제28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5장 승진임용

제29조(기본원칙)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상위직 결원보충은 의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력의 균형 있는 관리와 기관 간의 승진기회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각 기관 간의 상호 교류, 승진인원의 배정 등 필요한 인사조정을 할 수 있다.

제30조(승진방법) 승진임용은 결원에 대하여 반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1조(승진심의 등) ① 일반직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 순으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영 제30조제1항의 별표 4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제32조(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목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작성한다.

1.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

가.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나. 제2차 시험성적: 2할

다.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

2.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

가. 승진의결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나.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33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른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8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 소요 최저연수는 별표 19에서 정한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 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제34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다른 직렬 전직 임용 시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 연구사 또는 지도사

제3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

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이 경우 영 제7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민간기업 전담공무원과 영 제27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인사교류 공무원의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36조(인사교류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임용권자는 영 제33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인사교류 공무원의 근무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대 1년의 범위에서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할 수 있다.

제37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가산점 대상이 되는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별 가산점은 별표 20과 같으며, 언어능력검정시험 종류 및 가산점은 별표 21과 같다.

제38조(근무경력 가산점) ①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항에 따른 가산점 부여요건 및 가산점은 별표 22와 같다. 이 경우 가산점 평정기간은 영 제31조의6제2항에 따른다.

②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른 전문직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범위와 대상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39조(실적 가산점) ①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실적 가산점은 3점의 범위에서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가산점의 부여 요건과 기준 등을 평정 대상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정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② 실적 가산점은 평정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하며,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은 각각 “실적 가산점”으로 본다.

제6장 교육

제40조(교육성적 불량자 등 조치) 의장은 각급 교육과정 입교자 중에서 수업태만으로 중간평가결과 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퇴교 조치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 불참 등으로 퇴교 조치된 공무원에게 그에 상응한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

제41조(교육수료자 사후관리) 의장은 각급 과정의 교육수료자가 교육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실무에 활용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들의 보직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해야 한다.

제7장 다면평가

제42조(다면평가 실시) 의장은 영 제8조의4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43조(다면평가 방법) ① 다면평가는 연 2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횟수 및 시기는 조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다면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평가대상, 방법 및 일정 등에 대한 사전안내를 실시하여 평가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의장은 다면평가 시행 전 피평가자가 업무추진실적 등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두어, 평가자에게 피평가자의 실적 등에 관한 세부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④ 평가자는 피평가자와 근무경험이 있는 업무 유관자 중 무작위로 선정하되, 특정 직렬 또는 부서의 직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의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자 구성 및 각 평가자가 부여한 점수는 비공개해야 한다.

⑥ 그 밖에 다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44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의장은 다면평가 결과를 인사위원회 승진 심의 또는 의결 시 보완자료로 활용하며, 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인사관리 등에 활용하는 경우 그 대상 범위와 적용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하되, 사전에 공무원에게 안내해야 한다.

③ 의장은 피평가자에게 평가항목별 점수 및 직급별 피평가자 전체의 평균점수 등을 공개하여 개인의 능력개발을 유도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각종 시험의 구비서류 (제8조제2항 관련)

구분	구비서류의 종류	비 고
1	주민등록표 초본 1통(전체 이력기재)	시·구, 읍·면·동장 발행
2	복무확인서 1부	현역군인에 한함
3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4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규정된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함
5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규정된 수급자로서, 저소득층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6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규정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7	학교생활기록관계서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비고: 위 표의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표 초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로부터 제출받는 것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고 첨부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각 1부를 제출받아 첨부해야 한다.

[별표 2]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전직시험 응시자격 구분표

(제18조제4항, 제5항 및 제23조제1항 관련)

직렬	계급		연구관·연구사
	직렬	직류	
학예연구		학예일반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국가유산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
		미 술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미술관학, 예술학 또는 미학을 전공한 사람
		국 악	국악 또는 한국무용을 전공한 사람
		국 어	국어국문학, 국어정책학 또는 언어학을 전공한 사람
편사연구		편 사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
기록연구		기록관리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공업연구		기 계	정밀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공학, 항공우주공학 또는 조선공학을 전공한 사람
		전 기	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또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사람
		전 자	
		금 속	금속공학 또는 금속재료공학을 전공한 사람
		섬 유	섬유공학을 전공한 사람
		화 공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단백질공학, 생물정보학 또는 환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화 학	
		산업경영	산업경영학, 산업공학, 공업경영학 또는 산업통계학을 전공한 사람
		물 리	물리학, 응용물리학 또는 원자력공학을 전공한 사람

계급		연구관·연구사
직렬	직류	
농업연구	작물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환경	농학, 자원식물학, 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생화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수자원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작물보호	농화학, 농생물학, 환경학, 환경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미생물학, 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 곤충학, 농학, 원예학 또는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경영	농업경영학, 농경제학, 축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자원경제학 또는 통계학을 전공한 사람
	산업곤충	잠사학, 천연섬유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농공학, 곤충학, 생물학, 천연고분자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화학, 농화학, 유전공학 또는 약학을 전공한 사람
	원예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사람
	생명유전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 식물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화학공학, 농학, 원예학, 농화학, 생물공학, 천연물화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농촌생활	식품학, 식품가공학, 생화학, 피복과학, 조경학, 농촌계획학, 산업공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경제학, 농촌관광학, 산업보건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
	축산	축산학, 축산경영학, 수의학, 식품가공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생화학, 환경공학 또는 유전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공	농공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토목공학, 농업기계공학, 전기공학, 식품가공학, 환경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
녹지연구	농식품개발	식품학, 식품영양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생물공학, 식품효소공학, 식품미생물학, 생화학, 농화학, 단백질공학, 식품저장학, 천연물화학, 육가공학, 유가공학 또는 조리과학을 전공한 사람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사람
	조경	

계급		연 구 관 · 연 구 사
직렬	직류	
수의연구	수 의	축산학, 수의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의학, 한의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해양수산 연 구	해양환경	해양학, 해양공학, 환경공학, 해양오염학, 화학, 지구과학, 지구물리학, 지리정보학, 해양원격탐사학, 해양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자원	수산자원학, 어장학, 해양생산관리학, 해양생물학, 생물통계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양식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해양오염학, 해양생물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공학	해양학, 어구어법학, 어구공학, 어업기기학, 해양생물학, 수산토목학, 해양공학, 조선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
	수인가공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산가공학, 수산화학, 생화학, 생명공학 또는 미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경제	수산경제학, 수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또는 자원경제학을 전공한 사람
보건연구	의 학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수의학, 미생물학, 생리학 또는 생화학을 전공한 사람
	약 학	보건학, 약학, 한약학, 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화학을 전공한 사람
	공중보건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환경연구	환 경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
시설연구	토 목	토목공학, 건설도시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
	건 축	건축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산업공학 또는 조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방재안전 연구	안전관리	안전공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 경제학, 경영학, 보험학, 통계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항해학, 경찰학, 정책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소방학, 소방방재학, 소방행정학 또는 위기관리학을 전공한 사람
	재난관리	방재안전학, 도시방재학, 토목공학, 보건학, 보건환경안전학, 기상학, 도시공학, 지형공간정보학, 건축공학, 환경공학, 자원공학, 지질학, 미생물학, 수의학, 원자력공학, 해양공학, 항공우주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

비 고 : 위 표에서 “전공한 사람”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별표 3]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전직시험 응시자격 구분표

(제18조제4항, 제5항 및 제23조제1항 관련)

직렬	계급 직류	지	도	관	지	도	사
농촌지도	전 직 류 (농촌생활 직류는 제외한다.)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을 전공한 자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 학이상 졸업자		
	농촌생활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을 전공한 자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 학 또는 인간공학의 전문대학이상 졸 업자		
어촌지도	어 촌	수산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자			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 비 고 : 1.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라 함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관련 계통 대학에 편입한 자는 당해 관련 계통의 대학을 수료하거나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단서조항은 2018년 지도사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부터 적용함>

[별표 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

(제17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관련)

직렬 \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사 서	사 서	1·2급 정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수 의	수 의	수의사	수의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선체, 조선의장)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선체, 조선의장)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선체, 조선의장)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선체, 조선의장,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선체, 조선의장,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선체, 조선의장,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기능사(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위 생	위 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조 리	조 리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비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4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5]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 (제18조제1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	기술사	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	기사(3년), 산업기사(6년)	기사, 산업기사(3년), 기능사(4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2년)	산업기사, 기능사(2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2년)

비 고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후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제외한다.
-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 경력경쟁임용 해당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 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급 : 10년이상, 3급 : 8년이상, 4급 : 4년이상
-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은 50퍼센트를 인정한다.
-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 경기대회를 말한다.

[별표 6]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8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컴퓨터시스템,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 능 사 : 정보기기운용, 프로그래밍, 임베디드
	데 이 터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농업기계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설비보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자동화설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피복아크용접, 가스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아크용접, 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선박기관정비,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 술 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 능 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산업안전, 교통, 설비보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자동화설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착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피복아크용접, 가스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아크용접, 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조 선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선체, 조선의장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기 능 사 : 선체설계, 선체건조, 선박기관정비
	일반전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전 자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자 기 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컴퓨터시스템, 품질경영 산업기사 : 자동화설비,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커스텀레이아웃, 품질경영 기 능 사 : 자동화설비, 전자, 임베디드, 전자카드
	원 자 력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금 속	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 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 능 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	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 능 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일반화공	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안전,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 능 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농 업	자 원	기 술 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 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기 능 사 :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약취급
	일반농업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 능 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식물검역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임업종묘,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안전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 능 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녹 지	조 경	기 술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 산림, 조경
	산림자원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종이제조
	산림보호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 능 사 : 산림
	산림이용	기 술 사 : 산림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 능 사 : 산림, 목재가공, 펄프종이제조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 술 사 : 해양,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업,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안전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 능 사 : 수산양식, 식품가공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업,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일반선박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선체, 조선의장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선박항해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조선선체, 조선의장, 항로표지 산업기사 : 조선, 항로표지
	선박기관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해양교통 시 설	기 술 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능 장 : 전기, 전자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기 능 사 : 전기, 전자,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 능 사 : 식품가공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안전 산업기사 :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수 질	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대 기	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폐 기 물	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항 공	일반항공	기 술 사 :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 사 : 항공 산업기사 : 항공
	정 비	항공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기 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 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일반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수도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건 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지 적	기 술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 지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 설 계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디자인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 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기 능 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 웹디자인개발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방송통신	통 신 사	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통신기술	기 능 장 : 전자, 통신설비
	전송기술	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통신 기 술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 능 사 : 전자, 정보통신,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프로그래밍
조리	조리	기 능 장 : 조리 산업기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북어) 기 능 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북어)
위생	사역	기 능 사 : 환경기능사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설비보전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설비보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 능 사 : 전기, 설비보전, 조경

비 고: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등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류						
행 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법무행정					
	재 경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1급 (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3급(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3)	직업상담사2급
	문화홍보	변호사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	감정평가사 세무사		
	감 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세 무	지 방 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교 육 행 정	교육행정	변호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사회복지사 1급(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데 이 터			멀티미디어콘텐츠제 작전문가(9)	멀티미디어콘텐츠제 작전문가(6)	멀티미디어콘텐츠제 작전문가(3)	멀티미디어콘텐츠제 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직렬 \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공 업	일반전기			무대조명전문인1급	무대조명전문인2급	무대조명전문인3급
	일반기계			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	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	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원 자 력	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원자로조종 감독자, 원자로조종 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농 업	축 산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수 의	수 의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수산	수산질병관리사(7) 수의사(7)	수산질병관리사(3) 수의사(3)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일반선박	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해양수산	선박항해	1급 항해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선박기관	1급 기관사(3)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의사(2) 한 의사(2) 치과 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	보건교육사3급
	방 역	의사(2) 한 의사(2) 수의사(7) 약사(7) 간호사(12)	수의사(3) 약사(3) 간호사(6)	수의사 약사 간호사(3)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위생사(12) 영양사(12)	위생사(8) 영양사(8)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렬	직류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기공사(12) 치과위생사(12) 작업치료사(12) 보건의료정보관리사(12) 안경사(12)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임상심리사1급(7)	임상병리사(8) 보건의료정보관리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기공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보건의료정보관리사(8) 안경사(8)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3)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심리사1급(3)	임상병리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안경사(5)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3)	임상병리사(2) 보건의료정보관리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보건의료정보관리사(2) 안경사(2) 임상심리사2급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2) 한의사(2)				
	치 무	치과의사(2)				
약 무	약 무	약사(7) 한약사(7)	약사(3) 한약사(3)	약사 한약사		
간 호	간 호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환 경	일반환경	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7)	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3)	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	위생사(2) 정수시설운영관리사2급	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3급
	수 질					
	대 기					
	폐 기 물					
항 공	일반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항공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운항관리사(10)	사업용조종사 항공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운항관리사(6)	자가용조종사(3) 항공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 정비사(3) 운항관리사(3)	자가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3)	자가용조종사	
	정 비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항공기관사(6)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 항공기관사(3)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건 축	건축사(5)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12)	건축사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9)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6)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3)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
	디 자 인	건축사(5)	건축사			
속 기	속기			한글속기 1·2급(5)	한글속기 1·2·3급(2)	한글속기 1·2·3급
위 생	위생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사역			영양사(5)	영양사(2)	영양사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비 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4 운전직류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4.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자격증 취득 전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은 50퍼센트를 인정한다.

[별표 7]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제18조제8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6호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7호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8호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호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 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시 간 선 택 제 임 기 제	가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급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 시 임 기 제	5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호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호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민간근무 경력자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법률을 따르되 인사규칙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 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시 간 선 택 제 임 기 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
	마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등
한 시 임 기 제	5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9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등

※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4.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법률을 따르되 인사규칙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별표 8]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제18조제3항 및 제8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	가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9]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과 전직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8조제2항 및 제23조제1항, 제3항 관련)

1. 연구직 공무원

직렬 \ 계급	직류	연 구 관	연 구 사
공업연구	기 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승강기)
	전 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 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컴퓨터시스템,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금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섬 유	기술사(섬유, 의류)	기사(섬유, 의류)
	화 공	기술사(화공, 세라믹, 식품)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식품안전, 화학분석)
	화 학		
	산업경영	기술사(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물 리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농업연구	작 물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약사(7)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약사
	농업환경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기상예보) 약사(7)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유기농업) 약사, 위생사(5)
	작물보호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산업곤충		기사(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6) ※1999. 3. 27. 이전 취득한 것을 말함.
	원 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생명유전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직렬\계급	직류	연 구 관		연 구 사	
농업연구	농촌생활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화학, 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평생교육사 1급, 사회복지사 1급(7)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평생교육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3), 영양사(5), 위생사(5)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안전, 폐기물처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수의사	
	농 공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건설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농식품 개발	기술사(식품, 축산, 농화학)		기사(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영양사(5), 위생사(5)	
녹지연구	임 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토양환경)	
	조 경				
수의연구	수 의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해양수산 연구	해양환경	기술사(해양,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해양자원개발, 수질환경)	
	수산자원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양식	기술사(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수산공학	기술사(해양, 어로)		기사(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가공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수산경제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보건연구	의 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 학	약사(7), 한의사(2), 한약사(7)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술사(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약사(7), 한약사(7), 수의사(7), 전문간호사(7),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5)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간호사(3), 조산사(3),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병리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위생사(5), 영양사(5)	

직렬	계급		연 구 관	연 구 사
	직류			
환경연구	환경	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의사(2), 약사(7), 수의사(7), 환경측정분석사(7)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의사, 약사, 수의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토목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안전연구	건축	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안전관리			기사(방재)
	재난관리			기사(방재)

비 고 : 1. 직류별로 연구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연구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기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력을 계산할 때 자격증 취득 전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50퍼센트를 인정한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지도직 공무원

직렬\계급	직류	지 도 관	지 도 사
농촌지도	작 물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임 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산업곤충	기술사(생사)	기사(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6) ※1999.3.27이전 취득
	원 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안전, 폐기물처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수의사
	가축위생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농촌사회	평생교육사 1급	청소년지도사(5), 평생교육사2급
	농업공학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승강기)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기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농촌생활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 1급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평생교육사2급, 위생사(5), 영양사(5)
어촌지도	어 촌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수산질병관리사(7)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수산질병관리사

비 고 : 1. 직류별로 지도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지도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기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력을 계산할 때 자격증 취득 전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 50퍼센트를 인정한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10]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2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데 이 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컴퓨터시스템,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공 업	일반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판금제관, 배관)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사, 소방설비:기계분야), 사진기능사
	농업기계				
	기계운전		기술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산업안전, 교통, 설비보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기능사(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착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일반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

직렬 \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강기,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전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전자)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컴퓨터시스템, 품질경영, 반도체설계)	산업기사(자동화설비,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원자력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원자력, 에너지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금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유	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2급(1999. 3. 27 이전 취득)	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일반화공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화학분석,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안전)	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일반화공	기술사(화공안전)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 가스)	산업기사(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공업	가스	기술사(화공안전)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 가스)	산업기사(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자원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광해방지)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농업	일반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식물검역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축산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안전)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생명유전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식품안전, 바이오화학 제품제조)	산업기사(종자, 식품)
녹 지	산림자원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기능장(산림)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업기사(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림보호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이용		기술사(산림)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능장(산림) 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수 의	수 의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업,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안전,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일반수산				
	어 로				
	해양교통 시설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조선선체, 조선의장)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1·2급 항해사	기사(조선선체, 조선의장,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5·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광해방지, 인간공학),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2급
보 건	방 역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전문간호사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안전)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위 생	위 생			위생사	위생사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사	역		영양사	영양사
				영양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 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 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 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 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 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지 ·보조기사	응급구조사2급
의 무	일반의무	치 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	간 호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 경	일반환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 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 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폐기물 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	기능장(산림)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 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 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조경, 산림, 식물보 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 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 리, 자연생태복원)
	수 질		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 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 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 양식, 수질환경)
	대 기		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 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 응용지질)	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음 진동)
	폐 기 물		기술사(화공, 산림, 상하수도,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 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사(화공, 원자력, 에너지관 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산업기사(화공, 산림, 에너지관 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 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 사	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 공기관사	산업기사(항공)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직류			
시 설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및지반)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응용지질, 방재)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일반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수도토목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지 적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 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교통시설	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지반)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설계				
	디자인	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방송통신	통신사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컴퓨터시스템, 무선설비, 정보처리)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무선설비, 방송통신)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조 리	조 리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방재안전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시공) 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시설관리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설비보전)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설비보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설비보전, 조경)
운전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비 고 : 1.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6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11]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 (제17조제1항 관련)

1.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직렬을 말한다)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구 분	6·7급		8·9급	
	가산대상 자 격 증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직 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임상심리사2급	
가산비율	5%	3%	5%	3%

비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11 2. 기술 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

구 분	6·7급, 연구사, 지도사,		8·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비고 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12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				

[별표 12]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7조제1항관련)

가.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경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 호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세 무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컴퓨터시스템,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 빅데이 터분석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데 이 터	산업기가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 능 사 : 정보기기운용, 프로그래밍, 임베디드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 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 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 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에너지관 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분야), 설비보전	
	농업기계		

공 업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자동화설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피복아크용접, 가스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아크용접, 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선박기관정비,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 술 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 능 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산업안전, 교통, 설비보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자동화설비, 전산응용기계제도,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착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파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피복아크용접, 가스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아크용접, 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조 선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선체, 조선의장 산업기사 :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기 능 사 : 선체설계, 선체건조, 선박기관정비	
	일반전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공 업	전 자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자 기 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임베디드, 반도체설계, 컴퓨터시스템, 품질경영 산업기사 : 자동화설비,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기 능 사 : 자동화설비, 전자, 임베디드, 전자카드	
	원 자 력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기사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	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 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 능 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	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 능 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 이전 취득)	
	일반화공	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안전,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 능 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 술 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 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기 능 사 :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	

농업	일반농업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 능 사 : 종자, 원예, 벼짓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식물검역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안전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가축인공수정사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품안전,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녹지	산림자원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종이제조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나무의사
	산림보호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 능 사 : 산림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나무의사
	산림이용	기 술 사 : 산림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 능 사 : 산림, 목재가공, 펄프종이제조	
	조경	기 술 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기 능 사 : 조경, 산림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나무의사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 술 사 : 해양,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기 능 사 :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업,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 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안전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 능 사 : 수산양식, 식품가공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수산물품질관리사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업,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해양교통 시 설	기 술 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 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능 장 : 전기, 전자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항로표지 기 능 사 : 전기, 전자커카,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식품안전,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식품 기 능 사 : 식품가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의사, 한 의사, 치과 의사, 수의사, 약사, 한 약사,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 급감독자, 응급구 조사 1급, 보건교 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 상병리사, 보건의 료정보관리사, 방 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 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 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 사2급, 보건교육 사2급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급

보 건	방 역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수의사, 약사,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간호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2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안전 산업기사: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
환 경	일반환경	기술사: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능장: 산림 기사: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대기·수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수 질	기술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 정수설비관리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정수설비관리사 2급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정수설비운영관리사 3급

환경	대기	기술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능장 : 산림 기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 환경 측정분석사(대기)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폐기물	기술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능장 : 산림 기사 :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시설	도시계획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 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일반토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수도토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 설	건 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건축 사
	측 지	기 술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 설 계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디자인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 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기 능 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 웹디자인개발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건축 사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방재통신	통신사	기술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 : 전자, 통신설비	
	통신기술	기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송기술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통신기술	기능사 : 전자카카, 정보통신,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프로그래밍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설비보전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설비보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 : 전기, 설비보전, 조경	

- 비 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나. 연구·지도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연구	기 계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설비보전	
농촌지도	농업공학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공업연구	전 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 자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자 기 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컴퓨터시스템,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자동화설비,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금 속	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 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공업연구	섬 유	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화 공	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안전, 화학분석	
	화 학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경영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 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산업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물 리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 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산업기사 : 정밀측정, 전자, 에너지관리	
농업연구	농식품 개발	기술사 : 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 :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축산 산업기사 : 식품, 축산, 유기농업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영양사, 위생사
	작 물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촌지도	작 물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농업연구	원 예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촌지도	원 예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농업연구	농업환경	기술사 :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산업기사 :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산업곤충	기사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농촌지도	산업곤충		
농업연구	작물보호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생명유전	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촌생활	기술사 :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어업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농촌지도	농촌생활	기사 :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농촌지도	농업경영	산업기사 : 섬유,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	농촌사회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청소년지도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농업연구	농 공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 자동화설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 (일반), 방사선취 급감독자
농업연구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안전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일반), 방 사선취급감독자
농촌지도	축 산	산업기사 : 축산, 식품	
녹지연구	임 업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조 경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촌지도	임 업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수의연구	수 의	기 술 사 : 축산 기 사 : 축산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농촌지도	가축위생	산업기사 : 축산	
해양수산 연구	해양환경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업,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안전	
	수산자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어촌지도	어 촌		

해양수산 연구	수산양식	기술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수산공학	기술사 : 해양, 어업,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수산가공	기술사 : 수산제조, 식품 기사 :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식품	
보건연구	의학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학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의공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환경연구	환경	기술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위생사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시설연구	토 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농촌지도	농업토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설연구	건축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건축사
방재안전 연구	안전 관리	기사 : 방재	
	재난 관리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13]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 (제18조제3항 관련)

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		2급· 연구관 지도관	3급· 연구관 지도관	4급· 연구관 지도관	5급· 연구관 지도관	6급· 연구사 지도사	7급· 연구사 지도사	8급	9급
경 찰 공 무 원		치안감	경무관	총 경	경 정	경 경 감 위	경 사	경 장	순 경
소 방 공 무 원		소 방 감 정	소방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군 인		대 령	중 령	소 령	대 위	중 위	소 준 위원사	상 중 사사	하 사
교 육·인·사·원 (사립학교교직원포함)	대학(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교원	교 수 (3년이상)	교 수	부교수	조교수	전 강 임사			
	초·중·고등학교교원 및 기타교육공무원			24호봉 이 상	16호봉 이 상	12호봉 이 상	11호봉 이 하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1적용 대상자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적용 대학봉급액 적용대상자			17호봉 이 상	11호봉 이 상	7호봉 이 상	6호봉 이 하		
판 사 . 검 사		9호봉 이 상	6호봉 이 상	4호봉 이 상					
기 능 직 공 무 원						6급 이 상	7급	8급	9급 이 하
관 련 직 무 분 야 박 사 학 위 소 사 학 위 자 자		박사학위 소지후 10년이상	박사학위 소지후 8년이상	박사학위 소지후 4년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				6년	3년	3년	3년

- 비 고 : 1. 위 표의 구분에 따른 당해계급의 경력에 해당된 후 동경력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3년 이상(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13에서 정하는 관련 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를 채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어야 한다.
2. 위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 표 중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소요경력연수에 달한 때에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다.
3.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임용권자가 미리 정하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사람이어야 한다.

[별표 14]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제18조제4항제1호·제2호 관련)

1. 기술직공무원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직 렬	직 류	관 련 학 과
공 업	일반기계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원 자 력	원자력, 원자력공학, 원자핵공학
	조 선	조선, 선박기계공학, 조선공학
	일반전기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섬 유	섬유, 방직, 제직, 염색, 섬유공학
	일반화학	화학(화학, 공업화학, 농화학) 공학(화학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금 속	금속(금속공업), 야금, 주물(주물, 목형주조), 판금용접
	자 원	광산, 자원개발, 지질
녹 지	산림자원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생물학
	산림보호	임업, 임학, (농)생물학
	산림이용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 업	일반농업	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축 산	축산(학), 낙농(학), 사료(학), 수의학
수 의	수 의	수의학
환 경	일반환경	환경관리, 환경공학, 환경학, 화학, 화학공학, 생물학
해양수산	일반해양	수산 및 해양계통의 학과
	일반수산	
	일반선박	항해(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통신공학(해양계에 한함), 기관(학)
	선박항해	항해(학)
	선박기관	기관(학), 기관공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어 로	어로학, 항해(어선분야)학, 어업
	해양교통시설	해양학, 해양공학, 해양토목, 항해(학), 어업
시 설	일반토목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건 축	건축(건축설비)
	지 적	지적, 해양토목, 토목(토목건설), 토목공학
	측 지	
방송통신	통 신 사	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항 공	일반항공	항공정비, 항공운항학,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항공경영학
	조 종	항공운항학
	정 비	항공정비,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약 무	약 무	제약학, 약학, 위생제약학
보 건	보 건	위생,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기공, 보건, 의학, 치의학

※ 수의·지적·일반선박·선박항해·선박기관·일반항공·조종·정비·약무·약제·간호 직류는 별표 4에 규정한 자격
증소지자에 한함

2. 지도직공무원

직 렬	관 련 학 과
농 촌 지 도	농업, 농학, 농생물학, 식물보호학,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잠업, 잠사학, 원예(학), 축산(학), 수의학, 낙농(학), 사료(학), 농경제학, 농가정학, 농업교육(농촌지도 전공), 농업기계, 기계공학, 농공학, 농업토목, 토목공학, 농공학, 식품가공, 영양, 식품영양, 농산제조, 농화학, 아동, 가정교육, 가정복지
어 촌 지 도	수산경영, 증식학, 냉동학, 양식학, 수산가공, 수산, 해양

[별표 15]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 (제18조제5항 관련)

구분	계급	3급	4급	5급	6급 이하
근무경력 및 연구경력	박사	8년	4년	-	-
	석사	12년	8년	4년	-

비 고 : 근무경력 또는 연구 경력은 박사 또는 석사 학위 소지 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임

[별표 16]

연구관 및 지도관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

(제18조제5항 관련)

구분	계급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가목·나 목 및 제2호 가목에 해 당하는 연구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 하는 지도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다목·제2 호 나목 및 제3호 가목 에 해당하는 연구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나목· 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 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라목·제2 호 다목 및 제3호 나목 에 해당하는 연구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다목· 제2호 다목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 관	·연구사 및 지도사
연구 경력	박사	8년	4년	-	-
	석사	12년	8년	4년	-

비 고 : 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

[별표 17]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의 기술직렬 전직 시, 전직시험 면제기준 및
직무내용이 유사한 기술직렬 기준표 (제23조제4항 관련)

1. 연구직공무원

연구직		기술직	
직렬	직류	직렬	직류
공업연구	기계	공업	일반기계
			농업기계
			기계운전
	전기		일반전기
	전자		전자
	금속		금속
	섬유		섬유
	화학공		화학공
	화학학		
	물리		-
농업연구	작물	농업	일반농업
		농촌지도	농업
	농업환경	농업	일반농업
		농촌지도	농업
	작물보호	농업	일반농업
		농촌지도	식물검역
	농업경영	농업	일반농업
		농촌지도	농업
			농업경영
	산업곤충	농촌지도	잠업
	원예	농업	일반농업
		농촌지도	농업
			원예

연구직		기술직	
직렬	직류	직렬	직류
농업연구	생명유전	농업	일반농업
	농촌생활	농업	일반농업
		농촌지도	농촌사회
	축산	농촌지도	농촌생활
			축산
	농공	농업	축산
		농촌지도	축산
		공업	농업기계
		시설	농업토목
녹지연구	임업경영	농촌지도	농업기계
		농촌지도	농업토목
수목연구	수목	수목	수목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환경	전직류
		해양수산	임업
		어촌지도	어촌
	수산자원	해양수산	일반수산
		어촌지도	어촌
	수산양식	어촌지도	어촌
	수산공학	해양수산	어로
		어촌지도	어촌
	수산가공	어촌지도	어촌
	수산경제	해양수산	일반수산
		어촌지도	어촌
보건연구	의학	의무	일반의무
			치무
	약학	약무	약무
			약무
환경연구	환경	보건	보건
		식품위생	식품위생
시설연구	토목	시설	일반토목
	건축		농업토목
방재안전연구	안전관리	방재안전	건축
	재난관리		방재안전

2. 지도직공무원

지 도 직		기 술 직	
직 렬	직 류	직 렬	직 류
농 촌 지 도	작 물	농 업	일 반 농 업
		농 업 연 구	작 물
			작 물 보 호
			농 업 환 경
			농 업 경 영
			원 예
	농 업 경 영	농 업 연 구	농 업 경 영
	임 업	녹 지	전 직 류
		녹 지 연 구	임 업
	산 업 곤 충	농 업 연 구	조 경
			산 업 곤 충
	원 예	농 업 연 구	원 예
	축 산	농 업	축 산
		농 업 연 구	축 산
	가 축 위 생	수 의	수 의
		수 의 연 구	수 의
	농 촌 사 회	농 업 연 구	농 촌 생 활
	농 업 공 학	공 업	농 업 기 계
		농 업 연 구	농 공
	농 업 토 목	시 설	농 업 토 목
		농 업 연 구	농 공
	농 촌 생 활	농 업 연 구	농 촌 생 활
어 촌 지 도	어 촌	해 양 수 산	일 반 수 산
			어 로
		해 양 수 산 연 구	전 직 류

[별표 18]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준표

(제33조제1항 관련)

계 급	연 구 직	지 도 직
2 급	[별표 2] 제1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및 동표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별표 3]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3 급	[별표 2]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별표 3]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4 급	[별표 2] 제1호 다목,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별표 3] 제1호 나목,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5 급	연구관으로 재직한 기간	지도관으로 재직한 기간
6 급	연구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지도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7 급	연구사로서 재직한 기간	지도사로서 재직한 기간
8 급		
9 급		

비 고 : [별표 2], [별표 3]은 각각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의 별표를 말한다.

[별표 19]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표

(제33조제2항 관련)

상당계급 구분		5급	6급	7급	8급	9급
일 반 직 공 무 원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관 지도관	연구사 지도사			
경 찰 공 무 원		경 정	경감·경위	경 사	경 장	순 경
소 방 공 무 원		소 방 령 지방소방령	소 방 경 소 방 위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소 방 장 지방소방장	소 방 교 지방소방교	소 방 사 지방소방사
군 인		대 위	중 위	소 위 준 위 원 사	상 사 중 사	하 사
군 무 원		5급	6급	7급	8급	9급
국 가 정 보 원 직 원		5급	6급 기능 6급이상	7급 기능 7급	8급 기능 8급	9급 기능 9급이하
별 정 직 공 무 원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임기제 공무원	시간 선택제	“가급”으로 재직한 기간	“나급”으로 재직한 기간	“다급”으로 재직한 기간	“라급”으로 재직한 기간	“마급”으로 재직한 기간
	한시	“5호”로 재직한 기간	“6호”로 재직한 기간	“7호”로 재직한 기간	“8호”로 재직한 기간	“9호”로 재직한 기간
전문경력관		“가”군 20호봉 이하	“나”군 24호봉 이상	“나”군 23호봉 이하	“다”군 25호봉 이상	“다”군 24호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제37조 관련)

1. 5급부터 9급까지

계급 직렬	5급	6급·7급	8급·9급
행정, 세무, 교육행정, 사회복지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 노무사, 경영·기술지도사(지도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전 산	기술사(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 응용, 정보통신) * 행정5급중 6급제직시 전산직렬	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 처리, 정보보안,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빅데이터분석)	산업기사(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가공, 정보보안,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멀티 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공 업 (일반기계)	기술사(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 기계, 산업기계설비, 철도차량, 조선, 항공기관, 항공기체, 차량, 금형, 공장관리, 품질관리, 용접, 전기응용,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 응용, 정보통신, 기계안전, 소방, 소음진동, 산업계측제어, 건축기 계설비) 운송용조종사	기사(일반기계, 기계설계, 건설 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 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승강기, 농업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조선, 항공, 자동차정비, 그린전동자동차, 사출금형설계, 프레스금형설계, 품질경영, 교통, 용접, 전기, 전기공사, 반도체설 계, 전자계산기, 전자, 전자계산 기조직응용,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에너지관리, 건축설비, 소음진동, 신재생에너 지발전설비<태양광>) 기능장(기계가공, 건설기계정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 정비, 금형제작, 배관, 판금제관, 용접, 전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가스, 소음진동)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공장정비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 공조립, 기계조립, 기계설계, 치 공구설계, 정밀측정, 건설기계설 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기계정비, 승강기, 농업기계, 생산자동화, 에너지 관리, 철도차량, 조선, 항공, 자동 차정비, 사출금형, 프레스금형, 품질경영, 영사, 교통, 배관, 판 금제관, 용접, 전기, 전기공사, 반 도체설계, 컴퓨터시스템응용가공, 전자계산기제어, 전자,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소 음진동, 철도운송산업기사, 건축 설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 양광>)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공 업 (일반전기)	기술사(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품질관 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소방, 전 기안전, 방사선관리, 원자력발전)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 종사	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광학, 반도체설계, 의 공, 전자계산기, 전자, 임베디드, 품질경영, 승강기, 전자계산기조 직응용,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 분야>, 원자력, 에너지관리) 기능장(전기, 전자기기, 에너지관리) 방사성 동위 원소 취 급 자 (일 반), 핵연료물질취급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 철도, 철도신호, 광학기, 반도체 설계, 의공, 컴퓨터시스템응용가공, 전자계산기제어, 전자, 품질경영, 승강기, 사무자동화, 산업안전, 소 방설비<전기분야>, 에너지관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계급 직렬	5급	6급 · 7급	8급 · 9급
공 업 (금 속)	기술사(금속가공, 금속재료, 금속 제련, 세라믹, 용접, 표면처리, 품질관리, 비파괴검사)	기사(금속재료, 용접, 품질경영, 누설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기능장(금속재료, 압연, 제강, 제선, 판금제관, 주조, 용접, 표면처리)	산업기사(금속재료, 재료조직 평가, 판금제관, 주조, 용접, 표면 처리, 품질경영, 방사선비파괴 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 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공 업 (섬 유)	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섬유, 의류, 품질경영, 산업 안전)	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 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한복, 품질경영, 산업안전)
공 업 (일반화학) (가 스)	기술사(화학, 품질관리,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세라믹, 식품, 가스, 화학안전)	기사(화학,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생물공학, 품질경영, 화약류관리, 식품, 가스, 산업안전) 기능장(위험물, 가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품 질경영, 화약류관리, 식품, 가스, 산업안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공 업 (자 원)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광해 방지, 지질 및 지반, 해양)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광해 방지, 응용지질, 해양공학, 해양 자원개발, 해양환경)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농화학, 시설원예, 종자, 식품)	기사(시설원예, 유기농업, 종자, 생물공학, 식품, 식물보호, 바이 오회화제품제도)	산업기사(유기농업, 종자, 식품, 식물보호)
농 업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농화학)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 지	기술사(산림, 조정, 농화학, 시설 원예, 종자, 자연환경관리)	기사(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임업종묘, 조정, 시설원예, 종자, 화해장식, 자연생태복원, 토양환경) 기능장(산림)	산업기사(산림, 식물보호, 임산 가공, 조정, 종자, 자연생태복원, 임업종묘,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수산 (일반수산 일반해양)	기술사(수산양식, 어로, 해양, 수산제조, 식품, 수질관리)	기사(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 해양환 경,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 자 연생태복원)	산업기사(수산양식, 어로, 해양 조사, 식품, 수질환경, 자연생태 복원)
해양수산 (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기술사(조선, 기계, 산업기계설비)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	기사(조선, 항로표지, 일반기계)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컴퓨터 응용가공)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보 건	기술사(식품, 산업위생관리, 대기 관리, 소음진동, 수질관리, 폐기 물처리,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특수),	기사(식품, 산업위생관리, 대기환 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식품,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계급 직렬	5급	6급 · 7급	8급 · 9급
보 건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의무기록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영양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식품위생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포장, 품질관리, 축산, 방사선관리)	기사(수산제조, 식품, 포장, 품질경영, 축산)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식품, 포장, 품질경영, 축산)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응급구조사 1급, 의지·보조기사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의공	응급구조사 2급, 의공
의 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		간호사, 조산사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 경	기술사(대기관리, 소음진동, 수질관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기상예보,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상하수도, 수자원 개발,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해양, 조경, 농화학, 산림, 산업위생관리, 화공안전, 화공,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온실가스관리, 기상, 기상감정, 토목, 건설재료시험, 응용지질, 해양환경,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화공, 식물보호, 생물분류, 광해방지) 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산업기사(농림토양평가관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폐기물처리, 온실가스관리, 건설재료시험, 토목, 해양조사,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화공, 식물보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항 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통신)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방송통신, 무선설비, 정보통신) 기능장(통신설비)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방송통신, 무선설비, 정보통신) 자가용조종사
시 설 (도시계획)	기술사(교통, 도시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상하수도, 수자원 개발,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시공, 항만 및 해안, 조경, 지질 및 지반) 건축사	기사(교통, 도시계획, 건축, 토목,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응용지질, 교통, 방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교통, 건축, 건축일반시공, 토목,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계급 직렬	5급	6급·7급	8급·9급
시 설 (일반토목)	기술사(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지적, 지질 및 지반, 철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항만 및 해안, 조정, 교통, 도시계획, 건설안전, 광해방지)	기사(토목, 건설재료시험, 지적, 응용지질,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조정, 교통, 방재, 도시계획, 건설안전, 광해방지)	산업기사(토목, 건설재료시험, 지적,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조정, 교통, 건설안전)
시 설 (건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시 설 (지적, 측지)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시 설 (교통시설)	기술사(교통, 도시계획,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적, 철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조정,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기사(교통, 도시계획, 토목, 건설재료시험, 지적,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정, 건설안전, 콘크리트, 응용지질)	산업기사(교통, 토목, 건설재료시험, 지적,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정, 건설안전, 콘크리트)
방재안전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송통신 (통신사, 통신기술, 전자통신기술)	기술사(정보통신,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	산업기사(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자계산기제어, 전자,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가공, 무선설비)
위생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포장, 품질관리, 축산) 기사(수산제조, 식품, 포장, 품질경영, 축산)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식품, 포장, 품질경영, 축산) 환경기능사
시설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정)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정) 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정)

계급 직렬	5급	6급·7급	8급·9급
토목운영		기술사(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지적, 지질 및 지반, 철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항만 및 해안, 조경, 교통, 도시계획, 건설안전) 기사(토목, 건설재료시험, 지적, 응용지질,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조경, 교통, 도시계획, 건설안전)	산업기사(토목, 건설재료시험, 지적,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조경, 교통, 건설안전)
건축운영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기사(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사	산업기사(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통신운영		기술사(정보통신) 기사(전자전파통신, 정보통신, 전자, 방송통신, 무선설비) 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	산업기사(전자전파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자계산기제어, 전자,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기운영		기술사(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품질관리, 소방, 전기안전) 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기능장(전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운영		기술사(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철도차량, 차량, 금형, 공장관리, 품질관리, 용접, 정보통신, 기계안전, 소방, 건축기계설비, 소음진동), 운송용 조종사 기사(일반기계, 기계설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농업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그린전동자동차, 사출금형설계, 프레스금형설계, 품질경영, 정보통신,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승강기, 용접, 건축설비, 설비보전,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능장(기계가공, 건설기계정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금형제작, 배관, 판금제관, 용접)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기계가공조립,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기계정비, 승강기, 생산자동화,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사출금형, 프레스금형, 품질경영, 배관, 판금제관, 농업기계, 용접, 정보통신,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영사, 건축설비,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계급 직렬	5급	6급 · 7급	8급 · 9급
화공운영		기술사(화공, 품질관리, 화약류 관리, 세라믹, 식품, 가스, 화공 안전) 기사(화공, 화약류제조, 품질경영, 화약류관리, 식품, 가스, 산업안전) 기능장(위험물, 가스)	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품질 경영, 화약류관리, 식품, 가스, 산업안전)
가스운영		기술사(화공, 가스, 화공안전) 기사(화공, 가스, 산업안전) 기능장(위험물, 가스)	산업기사(위험물, 화약류관리, 가스)
선박항해운영 선박기관운영		기술사(조선, 기계, 산업기계설비)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표지) 1·2·3·4급 항해사, 1·2·3·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컴퓨터 응용가공)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농림운영		기술사(산림, 조경, 농화학, 종자, 축산, 식품) 기사(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임업종묘, 조경, 종자, 축산, 식품, 생물공학,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축산, 식품)
보건운영		기술사(대기관리, 소음진동, 수질 관리,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식품, 방사선관리)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식품) 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 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방 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의무 기록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수 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 위생관리) 임상관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2. 연구사

계급 직렬	연구사
공업연구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광해방지,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철도차량, 조선, 항공기관, 항공기체, 차량, 금형, 금속가공, 금속재료, 금속제련, 세라믹, 용접, 표면처리, 화공, 섬유, 의류,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공장관리, 포장, 품질관리, 제품디자인, 지질 및 지반, 해양, 컴퓨터시스템운용, 정보통신, 식품, 가스, 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전기안전, 화공안전, 비파괴검사, 방사선관리, 원자력발전, 건축기계설비, 소음진동)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광해방지, 일반기계, 기계설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승강기, 농업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조선, 항공, 자동차정비, 그린전동자동차, 사출금형설계, 프레스금형설계, 금속재료, 용접, 화공,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생물공학, 섬유, 의류,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광학, 반도체설계, 의공, 전자계산기, 전자, 임베이드, 포장, 품질경영,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컬러리스트, 응용지질, 해양자원개발, 해양환경,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방송통신, 무선설비, 정보통신, 식품,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누설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원자력, 에너지관리, 반도체 설계, 건축설비, 소음진동,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농업연구	기술사(농화학, 시설원예, 종자, 조경, 섬유, 의류, 식품,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기사(시설원예, 유기농업, 종자, 조경, 메카트로닉스, 생물공학, 섬유, 의류, 식품, 식물보호,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2급
농업연구 (잡업곤충)	기술사(생사)
농업연구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기사(축산, 생물공학,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
농업연구 (농 공)	기술사(품질관리, 농어업토목,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조경, 도시계획,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차량, 금형, 용접, 가스, 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전기안전, 화공안전, 비파괴검사) 기사(품질경영, 토목, 조경, 도시계획, 일반기계, 기계설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공조냉동기계, 농업기계, 메카트로닉스, 사출금형설계, 프레스금형설계, 용접,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누설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농업연구 (농식품개발)	기술사(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식품, 유기농업, 축산, 생물공학) 영양사, 위생사
녹지연구	기술사(산림, 농화학, 시설원예, 종자, 조경) 기사(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임업종묘, 시설원예, 종자, 조경, 화훼장식)
해 양 수산연구	기술사(수산양식, 어로, 해양, 수산제조, 식품, 수질관리) 기사(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 해양환경, 생물공학,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

계급 직렬	연구사
보건연구	기술사(식품,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소음진동,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식품,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환경연구	기술사(대기관리, 소음진동, 수질관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해양, 조경, 농화학, 산림, 산업위생관리, 화공안전, 기상예보, 화공)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온실가스관리, 기상, 토목, 건설재료시험, 응용지질, 해양환경,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화공, 식물보호, 생물분류) 의사, 수의사, 약사, 위생사, 환경측정분석사
시설연구 (토 목)	기술사(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지적, 지질 및 지반, 철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항만 및 해안, 조경, 교통, 도시계획, 건설안전) 기사(토목, 건설재료시험, 지적, 응용지질,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조경, 교통, 도시계획, 건설안전)
시설연구 (건 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기사(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사
방재안전 연구	기사(방재)

3. 지도사

계급 직렬	지도사
농촌지도	기술사(농화학, 시설원예, 종자, 축산, 산림,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지적, 지질 및 지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조경, 도시계획,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차량, 금형, 용접, 섬유, 의류, 식품, 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교통) 기사(시설원예, 유기농업, 종자, 축산,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임업종묘, 토목, 건설재료시험, 지적, 응용지질,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일반기계, 기계설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공조냉동기계, 농업기계, 메카트로닉스, 자동차정비, 사출금형설계, 프레스금형설계, 용접, 섬유, 의류,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식품,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토양환경, 화훼장식, 농화학, 식물보호, 정밀측정, 승강기, 교통) 수의사, 청소년지도사,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2급, 생산기사 2급(1999. 3.27. 이전 취득.)
어촌지도	기술사(수산양식, 어로, 해양, 수산제조, 수질관리) 기사(수산양식, 어업생산물관리, 해양공학, 해양자원관리, 해양환경, 수산제조, 수질환경, 해양자원개발)

- 비고 : 1. 영 제55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의 관계규정에 따라 신규임용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에 가산점평정을 할 수 없다.
2. 명칭변경, 통합,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자격증으로 인정한다.
3. 자격증의 직급별 적용방법

구분	가산점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5

[별표 21]

언어능력 검정시험 종류와 성적 및 가산점(제37조 관련)

언어	언어능력 검정시험 성적		성적	가산점
영어	TOEFL	IBT	71점 이상	0.25
	TOEIC		700점 이상	
	TEPS		340점 이상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60점 이상	
그 밖의 외국어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60점 이상	0.25

비고 : 위 표의 어학능력시험 중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시험 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별표 22]

1. 도서·벽지 등 특수지역 근무경력 가산점 (제38조제1항 관련)

구 분	가산점	비 고
특지·갑지	1개월 마다 0.025점	최대 0.75점
을지	1개월 마다 0.018점	
병지	1개월 마다 0.013점	

비고: 「인천광역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한 특수지 구분

2. 교류직위 등 특정직위 근무경력 가산점 (제38조제1항 관련)

구분	부여 기준	가산점	비 고
중앙부처 파견 및 교류	파견(영 제27조의2제1항제1호, 2호, 3호, 및 6호) 및 인사교류(영 제27조의5)에 임용된 5급 공무원	교류(파견) 임용 1년 경과 후 최초 교류 임용된 날부터 수도권(서울, 경기) : 1개월 마다 0.02점 * 인천시 제외 비수도권 : 1개월마다 0.05점	최대 1.2점
인천시·군·구 교류	인사교류(영 제27조의5)에 임용된 5급이하 공무원	교류 임용 1년 경과 후 최초 교류 임용된 날부터 1개월마다 0.01점	최대 0.36점

3. 전문직위 근무경력 가산점 (제38조제2항 관련)

부여 기준	가산점	비 고
전문직위로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	- 3년 초과 4년 이하 : 1개월 마다 0.02점 - 4년 초과 5년 이하 : 1개월 마다 0.025점 - 5년 초과 : 1개월 마다 0.03점	최대 1.2점

4. 재난 및 안전관리 근무경력 가산점(제38조제2항 관련)

부여 기준	가산점	비 고
재난·안전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1년 이상 근무한 6급 이하 공무원(단, 대규모 재난 대응·복구 전담자로 지정된 경우 지정일부터 부여)	재난·안전관리 업무 전담직위 지정 1년 경과 후 지정일부터 1개월마다 0.05점	최대 1.5점

- 1) 재난안전 관련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소하천정비법」,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재해구호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필요)

본인은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20 년 일 일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호						-									
주 소	(우)														
전자우편					복수국적										
전 화					휴대전화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수입증지
붙이는 곳

※응시번호	 응 시 표 ()임용시험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생년월일			
20 년 월 일 ○○○장 ④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상반신·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
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7.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미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불필요)

응시원서

본인은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시표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20 년 월 일 ○○○장 (☎)			

주 의 사 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2호서식]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등록번호		제 회 번	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		()년도 제 회	
※ 급		직	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		지구	번
			직 급 별		급	직
① 성 명	(한글)		② 희망지역		※ 등록심사	
	(한문)		제1지역		사진대조	서류심사
	(영문)		제2지역		㉠	㉠
④ 주 소					(사진부착)	
⑤ 연 락 처	전화번호 :					
	휴 대 폰 :					
⑥ 병 역	○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⑦ 학 력						
부터	까지	학 력		전공 · 부문 · 과목		
⑧ 자 격 면 허				⑨ 상 별		
연 월 일	종 별		연 월 일	사 항		
⑩ 경 력						
부터	까지	경 력 사 항			발령청	

(※ 응시원서 부분 첨부란)

⑪ 비상연락처

관계	성명	연락처	

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의장 귀하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각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로서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및 공개경쟁시험합격자는 다음 요령에 따라 등록한다.

1. 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일 간
년 월 일까지

2. 등록장소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의회사무과

3. 구비서류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 (1) 임용후보자등록원서(소정용지) 사진부착란에 필히 사진(2매)을 부착할 것
- (2) 주민등록부 초본(전체 이력기재) 또는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 및 미수검자, 시.도 병무청 및 시.구.읍.면.동장 발행) 1통
-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인사담당자의 원본대조.확인이 된 것) 1통
- (4) 경력증명서(경력이 있을시) 1통
- (5)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그 사본 1통
- (6) 취업보호대상자는(전몰군경의 유족인 경우 대리취업 확인서) 국가보훈처발행 관계증명서 1통
- (7) 민간인신원진술서(소정용지에 사진4매를 완전 부착할 것) 4통
※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된 후보자만 제출
- (8) 공무원전력조사서 1통(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경우에 한함)
- (9)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이상 구비서류를 등록원서 2통과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원서와 민간인 신원진술서에 사진을 각각 부착한다.

(사진은 응시원서 부착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5매가 소요됨)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할 경우 서류 제출 받지 않음(본인이 정보에 대한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

나.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임용후보자등록서 2통에 현 근무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인사기록카드 1통만을 첨부한다.

4. 등록원서 제출방법

가. 등록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우송한다.

나. 등록필증 송부용 봉투(주소 성명을 명기하고 반신용 우표 첨부)를 필히 동봉한다.

5. 원서 기재요령

가. 등록원서는 한글로 작성(워드 또는 펜으로 기재)하되, 한글만으로는 애매한 것은 ()안에 한자를 쓴다.

나. 숫자는 상용 숫자를 사용하되 년월일에 있어서는 1980년 1월 31일을 1980. 1. 31.과 같이 약기한다.

다. 각란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할 것이며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① 성 명 … 한글과 한자를 모두 기재한다.

② 희 망 지 역 … 희망지역은 제1희망, 제2희망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나만을 기재한다.

③ 시험합격구분 … (예) 72년, 제1회 7지구 128번 5급, 행정직 등 기재

④ 주 소 … 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기재

⑤ 연 락 처 … 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

⑥ 병 역 관 계 … 남성인 경우 ‘병역필’, ‘면제’, ‘미필’ 중 체크(√), 여성인 경우 ‘여성’ 체크(√)

* 남성인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미필’에 체크(√)

* 여성인 경우 군 복무 중 또는 군 복무를 마쳤더라도 ‘여성’에 체크(√)

⑦ 학 력 … 중학교 이상 학력만 기재하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년수를 기재

⑧ 자 격, 면 허 … 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재

⑨ 상 별 … 수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재

⑩ 경 력 … 공무원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재

⑪ 비 상 연 락 처 …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임 용 후 보 자 명 부

① 등록 번호	② 등록 연월일	③ 성명	④ 생년 월일	⑤ 성별	⑥ 현주소	⑦ 최종 출신 학교명	⑧ 특기	⑨ 병열필 미필	⑩ 희망 기관	⑪신원조사			⑫추 천					⑬임 용			비고
										의뢰	회보	송부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연월일	직명	근무 관서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 ⑪ 신원조사 항목은 「보안업무규정」제36조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신원조사 대상자만 해당함

[별지 제4호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전화번호)

수 신

참 조

제 목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
(문서분류기호)로 추천하신 공무원임용후보자의 임용결과를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지방
공무원 인사 규칙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계 급	직 렬	추천인원수	임용자수 (임용예정자수)	비 고

- 첨 부 : 1. 임용자 명단 1부
2. 임용불응자 명단 부
3. 미임용자 관계서류 부

(발 신 기 관 명)

직 인

1. 임용자 명단

등록번호	성명	임 용 연 월 일	임 용 직 급	임 용 직 위	비 고

0202-1-10A
1969. 12. 3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0g/㎡)

2. 임용불응자 명단

등록번호	성 명	임 용 불 응 사 유

비

0202-1-11A
1969. 12. 3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0g/㎡)

[별지 제5호서식]

시 험 요 구 서

접수번호	기 관		개 인				
①	소속		② 시험 구분		③ 임용예정 직 급	직명	
	요구					직류	
						계급	급
④	한글		⑤ 연령	세	⑥ 현 직 급	직명	
	한자					직류	
						계급	급
⑦ 선 택 과 목	가. 나.		⑧ 필기시험 면제사유		⑨ 제 1 차 시험 면제사유	년 월 일 시행 제 회 1 차 합격 응시번호	
⑩ 자격·면허 훈련 등			⑪ 취업보호대상 여부 (해당란에○)	군제대자 (복무기간) 유공자 및 그 가족	※ 대장 원본 확인	대장번호	
						확 인 자 성 명	
위와같이 요구함.						계 인	(사진) (3.5cm×4.5cm)
년 월 일 (인) 인천광역시영종구의회 의장							
※ 시 험 시행사항	시 행 차 수	1		2		3	
	시행연월일	. . .		. . .		. . .	
	회 수	제 회		제 회		제 회	
	응 시 번 호						
	결 과						
응시 번호			응 시 표			계 인	(사진) 위 요구서에 첨부하는 것과 동일한 원판, 동일한 규격
년 시행 제 회 시험 임용예정직명 : (급 류) 성 명 : 시험요구기관명 : 년 월 일 인천광역시영종구의회 의장 (인)							

1203-1-1A
1978. 10. 13승인

190mm×268mm
인쇄용지(특급) 120g/m²

작 성 요 령

1. ※란과 응시표상의 각란은 시험실시기관에서 기재한다.
2. ①~⑪란은 시험요구기관의 인사사무담당자가 기재하되 다음 요령에 따른다.
 - ①란의 “소속”란은 응시자가 시험요구기관의 산하기관 소속공무원일 때 그 산하기관명까지 기재한다.
 - ②란은 “전직”, “경력경쟁임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③, ⑥란의 “직류”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된 직렬표에 의거 해당직류에 한하여 명확히 기재한다.
 - ④란은 정자(正子)로 기재한다.
 - ⑦란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 또는 [별표2]를 참조하여 1과목 또는 2과목(서기관이상 전직, 경력경쟁임용의 경우에는 (가)란에 1차 (나)란에 2차시험과목)을 기재하되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 과목을 따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과목명도 모두 명기하고 그 사유를 부기한다.
 - ⑧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관계규정에 따른 필기시험면제(서류전형 및 면접시험)대상자에 한하여 그 근거법규와 사유를 명기한다(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증명서류 즉 자격증사본 또는 연구실적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⑨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시험면제대상자에 한하여 본인의 제1차 시험 합격당시의 시행연월일, 시행회수 및 응시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⑩란과 ⑪란은 6급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에 한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3]중 가점이 높은 어느 하나를 기재하되 반드시 이를 증명할만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사진은 최근에 촬영한 것을 첨부하고 인사사무담당자의 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수입증지첨부란)

(절 취 선)

응 시 자 주 의 사 항

1. 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신분증과 답안작성에 필요한 필기도구를 지참하여야 한다.
2. 시험 당일은 매 시험 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책상 위 오른쪽에 응시표 및 신분증을 놓아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실무수습계획서

성명				성별	남.여	생년월일	년월일	주소			
시험구분	(제회 5급공무원 시험)				합격일자		년월일		유효기간		년월일
학력					경력						
임용상황	임용일자		임용부서		시보시간		시보단축기간		시보단축사유		보직부여
	년월일				년월일 월간 년월일		월				일자 : 년월일 직위 :
수습계획 및 수습실적	배치부서										
	수습 계획 기간		. . . ~ (일간)								
	실지 수습 기간		. . . ~ (일간)								

[별지 제7호서식]

년도 급 공개경쟁임용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한자)		

평정요소	위원평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원서명	성명 (서명)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정	우수	
			보통	
			미흡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담당확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 (1) 우수 : 위원 5명 중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2) 미흡 : 위원 5명 중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 5명 중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3) 보통 : “우수”와 “미흡” 외의 경우
-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년도 제 회 경력경쟁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한자)

평정요소	위원평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원서명	성명 (서명)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정	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불합격	
		담당확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 5명 중 2명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 5명 중 어느 한명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9호서식]

5급승진임용순위명부

○ 기관명: 년 월 일 작성자 인

○ 직 급: 년 월 일 작성자 인

[illegible]

※ 작성요령

- 5급 일반승진시험합격자 또는 심사승진대상자를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작성
- 교육훈련성적은 통보가 있을 때를 기준으로 명부를 조정
- 승진임용예정직급별 교육훈련 실시는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의함
- 총평정점은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시험성적, 승진임용예정직급의 교육훈련성적 등을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합산